

제조물책임제도의 경제적 효과

김 은 자 연구원
(산 업 연 구 실)

발 간 사

경제가 발전하고 산업화가 진전됨에 따라 제조물의 사용이 증가하고 있으며, 개방화로 인해 제조물의 소비는 더욱 다양해지고 있다. 이러한 다양한 제조물의 소비로 소비자의 효용이 증가하는 반면 제조물 사용으로 인한 피해사례도 증가함에 따라 소비자의 피해구제를 강화하기 위한 제도를 마련하려는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다. 더구나 시장개방으로 기업 간 경쟁이 치열해짐에 따라 기업들도 소비자의 안전에 관심을 나타내고 있으며,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따라서 정부는 제조물의 안전도를 높이고 제조물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를 구제하기 위해 제조물책임법제정을 계획하고 있으며, 1997년에 시행을 검토하고 있다고 발표하였다.

이 연구는 현재 우리나라 민법에 근거한 피해구제제도를 살펴보고 제조물책임과 관련된 판례를 소개하였다. 다음으로 제조물책임제도를 이미 실시하고 있는 외국의 판례와 제조물책임법을 검토함으로써 바람직한 제조물책임제도를 도입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하였다. 특히 이 연구는 제조물책임의 경제적 효과를 비교 분석함으로써 효율적인 제조물책임제도를 모색하고자 하였다. 다음으로 정부에서 제시한 제조물책임법에 대한 평가와 문제점을 경제적 효율성 측면에서 지적함으로써 제조물책임법의 입법과정에 많은 참고가 될 것을 기대한다.

이 연구를 성실히 수행해 준 본원의 김은자 연구원에게 감사드리며, 이 글을 읽고 유익한 논평을 해 주신 심사자에게 저자를 대신해 감사드린다. 끝으로 이 연구의 내용은 필자의 사견이며, 본원의 공식적인 견해가 아님을 밝혀둔다.

1997년 3월
한국경제연구원
원장 조석래

ABSTRACT

There has been increasing consumer protection concerning defective products in Korea. However, because the Civil Code is inadequate to protect damages caused by defective products, consumers require the extended product liability rule. Government plans to enact product liability law in 1997.

In this work, first, current product liability cases are reviewed and then foreign product liability laws and cases are introduced. And economic effects of product liability are analyzed comparing economic efficiency of negligence rule with strict liability rule. In view of economic efficiency, I evaluate the product liability law proposed by Korea Consumer Protection Board. I find out that product liability law proposed by KCPB emphasizes consumer's side and adopts strict liability rule. But under strict liability rule producer is liable for the harms arising from the use of manufacturer's products. Producer has voluntary incentive to reduce the harms. But consumer has no incentive to take precautions against using products and then consumer's moral hazard occurs. Therefore, strict liability rule should be considered carefully in product liability legislation.

I suggest that strict liability rule has to be adopted if precaution is unilateral - that is, if only the injurer can be looked to for action to reduce the probability and severity of an accident. If precaution is bilateral - that is, if both parties can take precautionary action to reduce the probability and severity of an accident - the negligence rule has to be applied.

목 차

I. 서론

II. 우리나라의 제조물책임제도 현황

1. 민법에 의한 손해배상제도
2. 제조물책임에 해당하는 판례 변화

III. 외국의 제조물책임제도의 역사와 사례

1. 미국의 제조물책임제도
2. 일본의 제조물책임제도
3. EC의 제조물책임제도
4. 각국의 제조물책임제도 비교

IV. 제조물책임제도의 경제적 효과와 시행에 따른 문제점

1. 제조물책임의 경제적 효과
2. 소비자보호원의 제조물책임제도
3. 제조물책임제도의 시행에 따른 문제점과 대응방안

V. 결론

부록 : 제조물책임법안(소비자보호원 안)

I. 서론

경제성장과 더불어 소비자의 의식이 높아짐에 따라 소비자의 권익이 기업의 경제활동에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되었다. 이와 같이 소비자보호가 중요한 문제로 부각됨에 따라 최근에는 소비자가 제품을 사용하다가 입게되는 피해에 대해서 기업이 그 피해를 적극적으로 보상해야 한다는 주장이 증가하고 있다. 더 나아가 소비자들은 제품의 결함으로 소비자가 피해를 입게될 경우 제조자가 책임을 지는 제조물책임제도를 입법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으며, 정부는 이런 분위기를 반영하여 제조물책임제도의 입법을 검토중에 있다.

한편 대외적으로는 OECD가입에 따라 제조물책임제도의 도입은 피할 수 없는 상황이다. OECD의 소비자정책위원회는 OECD회원국에게 리콜과 제조물책임제도의 실시를 권고하고 있기 때문에 OECD가입으로 인한 제도정비 과정에서 제조물책임제도의 도입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기업들도 변화하는 경쟁환경속에서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도 제조물책임제도에 대한 대비는 필수적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제조물책임제도가 도입되면 기업은 피해보상을 위한 보험금이나 소송비용부담 등 상당한 부담을 지게 되며, 그 결과 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 더구나 우리나라에서 현재 논의되고 있는 제조물책임제도는 소비자보호의 논리가 강조됨에 따라 소비자측에 치우친 경향이 있으며, 정부가 검토하고 있는 입법시안도 소비자보호 논리가 강조된 법안을 마련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제조물책임제도의 도입으로 인한 기업과 경제전체에 미치는 파급효과는 상당히 클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제조물책임제도가 활발하게 논의되는 시점에서 기업은 우리 현실에 알맞고 소비자와 기업 모두에 균형있는 제조물책임제도를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필요성에 따라 본 연구는 2장에서 우리나라 제조물책임제도의 도입배경과 현황을 살펴보고 현 제도하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제조물책임제에 준하는 제도와 성과를 살펴보고자 한다. 3장은 오래 전부터 제조물책임제도를 실시하고 있는 미국, 일본, EC의 제조물책임제도의 역사와 사례를 소개하고 각국의 특징과 그 변화추이를 살펴보고자 한다. 선진외국의 사례는 제조물책임제도를 도입하려고 하는 우리나라의 경우 많은 시사점을 줄 수 있을 것이다. 4장은 제조물책임제도의 경제적효과를 살펴보고 한국소비자보호원이 제시한 제조물책임법안을 살펴보기로 한다. 그리고 소비자보호원이 제시한 제조물책임법 시행에 따른 문제점을

경제적 효율성의 측면과 제도적 측면에서 살펴보고, 그 대응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II. 우리나라의 제조물책임제도 현황

1. 민법에 의한 손해배상제도

제조물에 대한 피해구제는 소비자보호의 사후적인 해결방법인데, 우리나라와 같이 사전적 예방조치¹⁾를 중심으로 한 소비자활동이 미진한 경우 사후적인 피해구제 기능의 강화가 소비자보호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²⁾.

현 제도하에서 제조물로 인한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는 방법으로는 상호교섭에 의한 구제, 한국소비자보호원에 의한 구제, 민사소송에 의한 구제방법 등이 있다. 첫째, 상호교섭에 의한 구제란 소비자가 사업자로부터 구입한 상품이나 용역에 대하여 불만이 있거나 그로부터 일정한 손해를 받은 경우에는 우선 소비자가 그 사업자를 찾아가서 그들간의 상호교섭에 의하여 불만을 해소하고 피해를 구제받는 것으로 소비자보호법에 '사업자는 물품 또는 용역에 관하여 소비자로 부터 제기되는 정당한 의견이나 불만을 반영하고, 그 피해를 보상처리할 적절한 기구를 설치 운영하여야 한다(소비자보호법 제17조)'고 규정하고 있다.

둘째, 소비자보호법은 한국소비자보호원에 소비자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를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소비자보호법 제28조 제1항). 소비자가 물품의 사용이나 용역의 이용으로부터 일정한 피해를 받은 경우 한국소비자보호원에 그 피해의 구제를 청구하면 한국소비자보호원은 피해에 대한 사실확인 및 법령위반사실을 확인하고, 소비자와 관련된 사업자에게 피해보상에 관한 합의를 권고하게 되는데 합의가 이루어지면 피해구제가 해결된다. 만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을 요청하게 되고(30일 이내 조정) 당사자는 조정내용을 통보받고 조정을 수락하면 조정서를 작성하게 되는데 조정서는 재판상의 화해와 같은 효력을 지닌다. 그러나, 원래 조정은 분쟁당사자들이 서로 자기의 주장을 조금씩 양보하여 원만한 합의에 도달하는 제도이므로 당사자 일방 또는 쌍방이 조정의 결과를 수락하지 않으면 그 조정은 아무런 구속력을 갖지 않기 때문에 소비자는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받아야만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다. 또, 소비자보호

1). 사전적 예방조치는 소비자의 안전을 위한 품질규제 및 사업자의 시설이나 자격과 같은 규제를 말한다.

2). 이승철(1994), P.166.

법은 결함상품으로 피해를 입은 소비자의 피해에 대한 배상책임규정이나 그 배상책임을 확보하기 위한 책임보험 등에 대해서는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피해를 구제하는 데 미흡하다.

셋째, 합의나 중재에 의한 방법으로 해결이 되지않을 경우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 현 민법체계하에서 제조물피해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구체적인 근거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피해자와 가해자 사이에 계약관계가 있을 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현행 민법에서 피해자가 계약관계가 있는 상품의 매도인에게 채무불이행책임(민법 제393조)³⁾ 또는 하자담보책임(민법 제580조)⁴⁾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방법이다. 채무불이행책임에 의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채무불이행책임중 불완전이행에 해당하는 것으로, 제조자와 소비자를 매도인과 매수인간의 계약관계로 보고, 매도인의 불완전이행을 인정하여 매수인의 손해배상을 인정하는 것을 말한다. 그런데 채무불이행책임이나 하자담보책임에 의해 피해구제를 받기 위해서는 소비자와 제조자간에 계약관계가 존재해야만 하는데 제조물에 소비자에게 전달되기까지 여러 유통단계를 거치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제조자와 소비자가 계약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제조자와 소비자가 계약관계가 없는 경우는 채무불이행책임이나 하자담보책임을 들어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하자담보책임은 매수인이 입은 손해만을 배상청구할 수 있으나, 확대손해에 대한 청구가 불가능하다. 또 매수인이 사실을 안 날로부터 6개월내에 제소해야하므로 제소기간이 단기(민법 제582조)라는 제약이 있다⁵⁾.

둘째, 계약법에 의해서 소비자가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받는 데는 한계가 있기때문에 계약법에서 한단계 나아가 불법행위(민법 제750조)⁶⁾를 적용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즉, 결함이 있는 제조물이 유통되어 최종소비자가 그 결함으로 인하여 손해를 입게되면 그 피해자인 소비자는 제조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⁷⁾ 이

3). 제393조 ①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통상의 손해를 그 한도로 한다. ②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채무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하여 배상의 책임이 있다.

4). 제 580조 ① 매매의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제575조의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그러나 매수인이 하자있는 것을 알았거나 과실로 인하여 이를 알지 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전항의 규정은 경매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 575조 ① 매매의 목적물이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질권 또는 유치권의 목적이 된 경우에 매수인이 이를 알지 못한 때에는 이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기타의 경우에는 손해배상만을 청구 할 수 있다.

5). 김성탁(1991), pp.71-76.

6). 제 750조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7). 민법상 무과실책임의 법적 근거로는 특수불법행위의 유형으로 책임무능력자책임(제755조), 사용자책임(제756조), 공작물 등의 점유자·소유자책임(제758조) 등이 있다.

경우 피해자는 일정한 요건 즉, 가해자가 고의 또는 과실이 있었음을 피해자가 입증하여야만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제품을 사용하다가 손해를 입은 피해자가 불법행위를 적용하여 소송을 제기할 경우, 피해자가 제품의 결함을 입증해야 하는데, 피해자는 가해자보다 제품에 대해 제한된 정보를 가지고 있기때문에 과실을 입증하는 것이 상대적으로 어렵다⁸⁾.

요약하면 현행 제도안에서 제조물로 인한 피해구제를 받는 방법은 상호교섭에 의한 방법, 소비자보호원의 중재를 통해 합의하는 방법 및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받는 방법이 있는데, 이 방법 중 합의나 중재는 법적 강제성이 없으므로, 사법적인 피해구제방법인 민사소송에 의해 손해배상을 받는 방법이 가장 강력한 구제수단이다. 그러나 민법체계내에서 제조물의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 소비자가 제조자와 직접적 매매계약관계가 없는 경우는 소비자의 제조자에 대한 직접청구가 불가능하며, 하자담보책임의 경우 확대손해에 대한 청구가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불법행위책임을 적용해도 피해자가 제조자의 고의·과실을 입증해야 하는 등, 피해구제에는 한계가 있다.

이와 같이 기존 민법체계에서는 해결될 수 없는 문제를 해결해서 소비자의 피해구제를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제조물책임의 도입이 제기되는 것이며, 제조물책임법은 민법의 불법행위를 다루는 특별법이라고 할 수 있다. 제조물책임법의 의의는 첫째,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제조자가 피해자에게 직접적으로 배상책임을 지도록 하므로써, 제조자와 소비자가 직접적인 계약관계가 아니라도 제조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둘째, 손해를 입은 소비자를 보호하고, 제조자가 제조물에 대한 안전성에 대한 주의의무를 다하도록 하는 기능을 수행하는데 있다고 할 수 있다⁹⁾.

2. 제조물책임에 해당하는 판례 변화

우리나라의 경우 그동안 결함상품과 관련한 판례는 과실책임을 원칙으로하는 불법행위책임을 적용하여 제조물책임 관련 소송을 처리하고 있다. 이런 판례들은 다만 경우에 따라 피고의 과실 및 인과관계를 추정하여 입증책임을 전환하여 과실책임의 원칙을 완화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그동안 제조물책임을 다룬 대표적인 판례로는 다음과 같다. 이들 판례를 살펴보면 대부분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위법행위에 대해 손해배상을 부담하는 과실책임의 원칙을 적용하여 제조물책임관련소송을 처리하고 있다.

8). 곽윤직(1994), pp.715-716, 김상용(1994), pp.35-36.

9). 김상용(1994), p.39, 강창경·최병록·박희주(1994), pp.49-50.

(1) 채혈병사건(대판 1976. 9. 14. 76 다 1259)

이 건은 서울적십자병원에서 수혈을 하면서 수술을 하다가 쇼크로 인하여 사망한 사건이다. 쇼크의 원인은 어떤 독성물질에 의한 것으로 추정되나 사후부검에서 독성물질을 발견할 수 없고 다만 납품된 채혈병중 2개의 병에서 대장균만이 발견되었다. 이에 원고는 채혈병제조상의 과실로 인한 사망이라고 주장, 채혈병제조회사에 대해서 불법행위책임에 근거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판결에서 ‘피고가 납품한 2개의 채혈병이 당초부터 오염되어 있었다고 단정할 증거가 없고 채혈병에서 검출된 대장균이 소외인을 사망케 한 쇼크를 일으킬 수 있는 것으로 단정하기에 미흡하므로 채혈병제조상의 멸균 등의 시험을 하지 아니한 채 납품한 잘못과 소외인의 사망 사이에 필연적인 인과관계가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여 원고가 패소하였다. 이 건은 원고가 결함의 존재 및 결함과 손해사이의 인과관계를 입증하지 못함으로써 패소하였다.

(2) 경상사료 사건

피고가 경영하는 사료공장에서 사료를 매입하여 자기 양계에 급식한 2-4일 후부터 닭들이 심한 탈모현상과 더불어 난소가 위축되고 복강 내 침출물이 충만하는 등 심한 중독현상을 일으키고 계사당 매일 약 80%에 달하던 산란율이 급격히 저하되기 시작하여 약 10일이 경과된 무렵에는 30% 이하로 떨어져 양계의 경제성이 완전 유실되어 끝내는 모두 폐계처분하기에 이르른 사건이다. 이에 원고는 배합사료에 어떤 불순물이 함유된 것이 틀림없다고 주장하여 그 사료 제조판매자에게 불법행위책임에 근거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대법원에서는 사료에 어떠한 불순물이 함유되어 있고 또 그것이 어떤 화학적 영양학적 내지는 생리적 작용을 하여 이를 사료로 한 닭들이 난소 협착증을 일으키게 되고 산란율을 급격히 현저하게 저하케 한 것인지는 이 사건에서 구체적으로 밝혀지지는 않았지만 적어도 그 사료에 어떤 불순물이 함유된 것이 틀림없어 제조과정에 과실이 있었고 이로 인하여 원고가 사육하던 닭들이 위와 같은 현상을 초래하게 된 것이라는 인과관계는 입증되었다고 판시하여 제조업자의 불법행위책임을 인정한 사건이다.

(3) 서울적십자병원 질소가스사건(대판 1979. 3. 27. 78 다 2221)

가스공급회사가 산소통으로 오인될 수 있는 용기에 질소를 넣어 병원에 공급하였는데 병원에서 이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환자에게 마취제와 함께 질소를 공급하여 환자가 사망한 사건이다.

대법원은 판결에서 ‘가스공급회사가 공급한 질소통이 외관상 산소통으로 오인될 수 있도록 도색과 문자가 된 채 서울적십자병원으로 공급되었다면, 공동불법행위자로서의 연대책임을 면할 수 없을 것’으로 판시, 가스공급회사의 책임을 인정하였다. 본 건은 제조·판매자는 안전한 사용방법을 지시 설명해야할 의무가 있으며, 표시결함으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한 경우 안전상품공급의무의 일환으로써 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하도록한 판례이다.

(4) 공구결함사건(대판 1979. 7. 10. 79 다 714)

차량정비공장에서 자동차 하부링의 너트를 풀기 위하여 복스대(공구의 일종)를 너트에 끼워 힘주어 돌리자 복스대가 부러지면서 파편이 자동차의 앞바퀴를 잡고 있던 원고의 오른쪽의 눈을 때려 원고가 각막열창 등의 상해를 입자 정비공장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이다.

대법원은 판결에서 ‘피고회사 정비공장에서 점유, 사용중이던 복스대가 낡아서 작업도중 부러진 것은 그 공작물의 보존상의 하자 즉 공작물자체가 통상 지녀야 할 안전성에 결함이 있는 상태였으며, 만약 그것이 제작상의 잘못 때문에 부러졌다고 하더라도 이를 피고 정비공장에서 필요한 공구로서 비치한 이상 이는 공작물의 설치·보존의 하자에 해당된다’고 원고승소판결을 내렸다.

본 건은 정비공장에 대해 민법 제 758조의 공작물 등의 점유자, 소유자로서의 책임을 인정한 판례이다. 그러나, 제조물책임법이 적용되면, 원고는 공구의 제조상 결함이 있다는 것을 전제로 제조업자를 상대로 제조물책임을 부과할 수도 있는 사건이다.

(5) 주사기결함사건 (대판 1979. 12. 26. 79 다 1779)

본 건은 만 6세의 어린이가 문방구에서 구입한 교재용 주사기를 가지고 놀다

가 주사기의 바늘구멍이 막히자 주사기를 왼쪽 눈앞에 들이대고 주사기를 압축하는 순간 공기압력에 의하여 바늘이 튕겨나와 왼쪽 눈이 동공폐쇄증에 걸린 사건이다. 이에 원고가 주사기 제조업자에 대해 불법행위책임에 근거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이다.

대법원은 본 건에 대하여 ‘주사기의 재료가 저질일 뿐만 아니라 제조상의 잘못으로 인한 제품의 현저한 결함이 있으며, 또 동 결함은 외부적으로 노출되어 있어 이를 제조한 피고가 동 결함을 알았거나 알 수 있는 정도이므로 피고는 이를 간과한 과실이 있다’고 판결했다. 또 이 사건은 ‘제품의 관계검사소에서 하자가 없다는 판정을 받은 것만으로 피고에게 위와같은 과실이 있었음을 반복할 자료는 되지 못한다’고 판시하였다.

본 판례는 피고에게 제조업자로서의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을 인정하여 불법행위책임을 부과한 사건이다. 그리고 품질관리법 등 일정한 형식이나 검사에 합격하였다고 해서 면책되는 것이 아니라 책임유무의 판단을 구체적 사건에 따라 결정하여야 한다는 것과 제품의 안전성에 중점을 둔 판례라는 점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다.

(6) 세원사료사건 (대판 1983. 5. 24. 82 다카 924)

본 건은 양계업자인 원고가 피고회사에서 제조·판매하는 배합사료를 매입하여 종전방식에 따라 곡류·어분 등을 첨가·배합하여 양계에 급식하자 아무이상 없던 닭들이 심한 중독현상을 일으켜 약 500수이상의 닭이 죽어버린 사건이다. 이에 원고는 사료 제조판매자에게 불법행위책임에 근거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본 건에 대해 원심에서는 ‘인근 양계업자 4, 5명 등도 피고로부터 배합사료를 매입하여 닭들에 급식한 결과 원고의 양계장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심한 중독증상을 나타내어 폐사하고만 사실과 , 원고가 사료를 보관함에 있어 어떤 잘못이 있었거나 그 배합과정이나 급식방법에 이상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않는 사실을 인정’하여 ‘피고가 제조한 사료의 성분과 급식한 닭의 폐사원인을 구체적으로 밝힐 수 없다고 해도, 사료의 어떤 불순물질에 의해 사육하던 닭들이 폐사하게 된 것으로 보아도 무리가 없다’고 판시 원고승소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에 대해 ‘가축보건소 등에 닭의 폐사원인을 감정의뢰한 결과 닭의 폐사원인은 노산침착증으로 감정하였고, 이의 발병원인은 사육환경이나

사료의 품질 및 어떤 질병의 후차적인 증상이 원인인데 원고가 사용한 사료가 이러한 원인이 되었다고 볼 수 없는 이상 피고회사의 배합사료 제조·판매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사육하던 닭들이 폐사한 것이라는 인과관계를 단정할 수 없다'고 판시, 원고패소 판결을 내린 사건이다.

본 건에 대해 원심은 '경상사료사건'에서와 같이 동일한 정황증거 내지 간접사실군에 의하여 사료상의 결함, 그에 대한 피고의 과실 및 인과관계의 존재 등을 추정하였다. 그러나 대법원은 인과관계의 존재를 부인하여 제조물책임에 대한 일관성이 결여된 판례로 지적되고 있다.

(7) 냉장고 병뚜껑 사건(대전지법 1987. 9. 17. 85 가합 828)

원고가 토닉워터 1병을 냉장고문 안쪽 병뚜껑 선반에 넣는 순간 그 선반의 오른쪽 부착부위가 떨어지며 선반과 그 선반이 부착되었던 냉장고 문부분의 사이가 벌어지면서 그 사이로 넣어두었던 토닉워터병이 바다에 떨어져 깨어졌고 깨진 유리조각이 원고의 눈에 튀어 부상을 입은 사건이다. 이에 원고는 냉장고 제조회사에 대해 업무상 주의의무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법원은 냉장고의 병뚜껑 선반에는 주로 유리제품인 병이 놓여지고 불의에 병뚜껑 선반이 냉장고에서 이탈되는 경우에는 병이 깨어져 냉장고 사용자에게 손해를 끼칠 수 있다는 사실을 예견하고 위 병뚜껑 선반이 냉장고에서 불의에 이탈되지 않도록 안전하게 설계 조립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위반하였다고 보고 제조자의 불법행위책임을 인정하였다

(8) 선박엔진 사건(서울민사지법 1987. 11. 11. 86 가합 3459)

본 건은 대선조선(피고)이 척양수산(원고)과 참치 원양어선 2척의 건조계약을 체결, 계약에 따라 피고 쌍용중공업으로부터 주기관을 공급받아 선박을 건조, 인도하였다. 원고가 위 선박으로 조업을 하던중 주기관의 결함으로 조업을 중단하게 되었다. 이에 원고는 대선조선에 대해서는 하자담보책임 및 불법행위책임을 쌍용중공업에 대해서는 불법행위책임을 물은 사건이다.

법원은 대선조선에 대해서 '하자가 조선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쉽게 발견할 수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피고 대선조선이 이를 발견하지 못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 대선조선이 이러한 하자를 발견하지

못한 잘못이 있다 하여도 동피고가 수급인으로서 도급인인 원고에 대하여 바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판시, 불법행위책임을 부인하였다.

쌍용중공업에 대해서는 '쌍용중공업이 선박주기관의 제작의 장치 잘못으로 발생한 피해가 사람의 생명, 신체에 손해를 입힌 것이 아니라 엔진자체의 기능저하에 불과하므로 원고가 부담하게 될 엔진의 수리비용이라든가 그 객관적 가치감소등과 같은 상품자체에 관한 손해와 상품의 결함으로 인한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못함으로써 입은 영업상의 손해까지 제조물책임론을 확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판시 불법행위책임을 부인하였다.

이 사건에서 대선조선에 대해서는 과실이 없음을 근거로 불법행위책임을 인정하지 않았고, 쌍용중공업에 대해서는 주기관의 결한 및 결함과 손해간의 인과관계가 존재함에도 제조물책임의 적용범위를 근거로 쌍용중공업의 손해배상책임을 부인하였다.

(9) 솔루메드롤 부작용 사건(서울 고법 1992. 5. 12. 91 나 55669)

본 건은 교통사고로 생명이 위독한 원고가 병원에 입원하여 솔루메드롤을 투약받고 완치 후 약 1년 5개월만에 부작용이 발생한 사건이다. 이에 원고는 제약회사에 대해 불법행위책임을 근거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법원은 ' 피고회사가 솔루메드롤은 제조당시의 의료기술수준에 적합한 제반검사를 통하여 안전성의 확인절차를 거쳐 개발되었고 발매후에도 수차의 제조품목허가 갱신과정을 통해 그 안전성을 검증받은 것으로써 그 약품설계과정상의 잘못이나 발매후의 부작용에 관한 조사·연구의무를 게을리 한 잘못이 없고 위 제품설명서에 위 약품에 관하여 당시까지 의학계에 알려진 상세한 내용의 설명문구를 기재함으로써 그 약품의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구체적인 사용지시 및 부작용에 대한 경고의무를 다하였다'고 판시하여 약품제조회사의 무과실을 이유로 원고패소판결을 내린 사건이다.

(10) 변압변류기 사건(대법원 1992. 11. 24. 92 다 18139)

본 건은 광석채굴회사인 원고가 피고회사가 제조한 계기용 변압변류기를 구입 설치하였는 바, 2년 2개월 후 이상전압의 침입으로 과열되어 화재가 발생하고 15

분 후 다시 2차 폭발로 인하여 원고회사 직원이 중화상을 입었으며 한사람은 사망한 사건이다. 대법원은 제조물이 현대의 기술수준 및 경제성에 비추어 기대가 능한 안전성과 내구성을 갖추지 못한 결함 내지 하자로 소비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상의 배상의무와는 별개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무를 부담한다고 판시하여 피고회사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였다.

<표 2-1> 우리나라 제조물책임 관련 판례 비교

사건명	판결근거	판결결과	의미
채혈병 사건 대판 1976.9.14 76 다 1259	불법행위책임	원고패소	인과관계증명 실패로 입증 책임전환 필요
경상사료 사건 대판 1977.1.25 75 다 2092	불법행위책임	원고승소	결함과 과실에 관한 사실상 추정
서울적십자병원 질소 가스 사건 대판 1979.3.27 78 다 2221	불법행위책임	원고승소	표시결함으로 인한 피해발생 인정
공구결함 사건 대판 1979.7.10 79 다 714	공작물의 설치·보존의 하자책임	원고승소	
주사기결함 사건 대판 1979.12.16 79 다 1772	불법행위책임	원고승소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인정
세원사료 사건 대판 1983.5.24 82 다 390, 82 다카 924	불법행위책임	원고패소	경상사료사건과 유사한 정황증거하에서 원고패소판결로 일관성 결여 결함 및 인과관계 추정규정 필요
냉장고 병꽃이 사건 대전지법 1987.9.17 85 가합 828	주의의무위반	원고승소	주의의무위반에 대한 불법행위책임 인정
선박엔진 사건 서울민사지법 1987.11.11 86 가합 3459	하자담보책임 및 불법행위책임	원고패소	제조물책임의 적용범위가 문제가 된 사건
솔루메드롤 부작용 사건 서울고법 1992.5.12 91 나 55669	불법행위책임	원고패소	제조물책임의 적용품목이 문제가 된 사건
변압변류기 사건 대법 1992.11.24 92 다 18139	불법행위책임	원고승소	제품의 결함개념 인정 제조상의 결함을 추정한 판례

위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현 민법체계안에서 제조물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은 일관성이 없으며, 민법이 정의하는 한계와 불명확한 적용범위로 인하여 제대로 손해배상을 받는 것이 어렵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민법내에 제조물피해에 대한 규정을 추가하든지 아니면 제조물책임법을 제정하든지간에 제조물 피해에 대한 배상규정을 명확히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Ⅲ. 외국의 제조물책임제도의 역사와 사례

1. 미국의 제조물책임제도

(1) 역사와 배경

제조물책임에 대해서 비교적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는 미국의 제조물책임에 관한 역사를 살펴보면, 초기의 미국 제조물책임법은 소비자가 직접 판매자가 아닌 제조자에 대하여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았다. 19세기 중엽의 유명한 판례로 Winterbottom v. Wright 사건¹⁰⁾이 있는데, 이 사건의 내용은 왜건의 바퀴에 결함이 발생하여 왜건에 타고 있던 사람이 부상을 당한 사건이다. 이 사건에서 판사는 제조자의 과실이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제조자와 소비자가 직접적인 계약관계가 없기 때문에 소비자의 제조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은 인정할 수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 사건은 계약법의 범위안에서 제조물책임을 밝힌 유명한 판례이다.

그러나 그후 1916년 MacPherson v. Buick Motor Co.사건¹¹⁾에서 판매회사가 아닌 제조회사의 책임을 인정하는 과실책임원칙으로 배상책임원칙이 변화하기 시작했다. 이 사건의 내용은 피고인 제조자가 자동차를 딜러(dealer)에게 판매하고 딜러는 다시 원고에게 판매하였는데, 원고가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자동차바퀴의 스포크(spoke)의 파괴로 전복되어 부상을 입자 자동차 제조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 사건이다. 이 사건에서 판사는 과실로 결함제품을 만들어내면 그것이 곧 사람의 안전을 위협에 빠뜨리는 것이 되고 따라서 그 제품은 본래적으로 위험한 물건이라 할 수 있으므로 원고와 피고간에 계약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피고

10). Winterbottom v. Wright 사건의 내용은 왜건 바퀴의 제조자가 잘 건조되지 않은 나무로 바퀴를 만들었기 때문에 바퀴에 결함이 생겨서 이 바퀴를 장착한 왜건에 타고있던 사람이 부상을 입은 사건이다. 직접계약원칙하에서는 사고를 당한 소비자가 왜건부품소매상에게 단지 수리를 요구할 수 있고 소매상은 명시적이든 묵시적이든 소비자와의 계약을 위반하지 않았기 때문에 부상에 대해서는 배상할 필요가 없다고 판결을 내린 사건이다. 박세일(1994), p.340, 강창경·최병록·박희주(1994), p.59.

11). 박기동(1994), pp.58-59, 강창경·최병록·박희주(1994), p.59.

는 원고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본래적으로 위험한 물건에 대해 계약상의 계약관계의 예외를 인정하여 제조자가 자신이 제조한 제조물의 사용자에게 대하여 직접 주의의무를 부담하도록 한 최초의 판례이다.

1963년에 Greenman v. Yuba Power Product Inc. 사건¹²⁾ 판결로 무과실책임원리가 정착되기에 이르렀다. 이 사건은 목공선반을 만드는 데 사용되는 전기공구를 사용하던 중 나무 파편이 튀어나와 눈을 다친 사건이다. 이 사고에 대하여 판사는 ‘제조자가 아무런 검사없이 사용되리라는 것을 알면서 시장에 물건을 유통시키고, 그 후에 그 물건이 인신사고의 원인이 될 결함이 존재하는 것이 밝혀지면 제조자는 불법행위법상의 엄격책임을 진다’고 하는 무과실책임을 인정한 판례이다.

1982년의 Beshanda v. John-Manville Products Corp. 사건¹³⁾을 거치면서 기업의 절대책임원리쪽으로 제조물책임원리가 이동하는 경향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이 사건은 석면의 유해성에 대하여 적절한 경고를 하지 않았던 것이 문제가 된 사건이다. 그 유해성 경고를 하지 아니했던 판매당시에는 아직 유해성 여부가 과학적으로 밝혀지지 않았던 때였다. 그러나 이에 대하여 법원은 제조기업에 대하여 책임을 인정한 판결로 기업절대책임을 인정한 판결이라 할 수 있다.

미국의 제조물책임의 역사는 계약원칙에서 과실책임으로 과실책임에서 엄격책임으로 발전하였으며, 1980년대에 이르러서는 기업의 절대책임을 인정하는 판례로 까지 이르게 되었다. 그러나, 근래에는 기업보호와 미국산업의 국제경쟁력 제고라는 관점에서 민사소송제도의 검토와 함께 종래의 엄격책임을 완화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으며¹⁴⁾, 제조물책임의 책임원칙이 기여과실항변을 인정하는 무과실책임원리나 과실책임원리로 돌아가려는 유턴(U-Turn)현상이 나타나고 있다¹⁵⁾.

(2) 주요 특징

미국에서 제조물책임제도는 기업이 사고발생을 억제하는 유인으로 작용하기도 했으나 그 비용이 커짐에 따라 해당 제품이나 기업이 존폐위기에 처하는 사태가 발생하기도 하였다. 예를 들어 일부 스포츠용품산업은 배상책임의 위기로 폐업하기도 하고, 일부제품 또는 신제품의 제조 판매를 중지하기도 하였다.¹⁶⁾ 제조물책임소송의 급속한 증가로 거액의 배상

12). 박기동(1994), p.59, 강창경·최병록·박희주(1994), p.63.

13). 박세일(1994), p.342.

14). 김성탁(1991), pp.82-83, Robert H.Malott, 양승규 역(1986), pp.90-91, 하중선(1994), p.57.

15). 박세일(1994), p.343.

16). 미국기업의 배상책임부담에 대해서는 신광식·구본천(1996) 참고.

금과 그로 인한 고액의 보험료부담을 견디어 낼 수 없어 사업에서 철수하거나 파산하는 기업이 증가하게 된 것이다.¹⁷⁾

또한 보험회사들도 제조물책임관련 보험상품을 팔지 않으려 하자 소비자보호를 위해 발전해 온 책임원칙인 엄격책임원칙에 대한 강한 비판이 일어나기 시작했다. 즉 엄격책임원칙이 미국경제의 기반을 잃게 만들었다는 주장이 산업계를 통해 일어나게 되었다. 미국 산업계는 이러한 엄격책임이론 적용을 제한하고 과실 책임으로 복귀하기 위해 연방제조물책임법의 제정을 요청하게 되었다.

이러한 소위 ‘제조물책임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하여 연방차원의 대응방법을 마련했는데, 하나는 모델법에 의한 대응이고 또 하나는 연방법에 의한 대응이다.¹⁸⁾ 1979년 상무부는 제조물책임 보험료를 안정시키고 제조자와 소비자간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서 모델이 되는 제조물책임법을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여 제조물책임모델법(The Model Uniform Product Liability Act)을 제정하여 공포하게 되었다. 그러나 이 법안은 각주가 참고로 하는 모델법의 성격을 갖기 때문에 구속력을 갖지 못하였다.

그러나 모델법이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자 연방제조물책임법을 입법화 하여 대응하려는 움직임이 일어났다.¹⁹⁾ 그 결과 모델법을 기초로하여 연방법안이 제시되었는데, 주요내용은 결함에 대한 기준을 완화하는 것이며, 보험위기의 원인이 되는 징벌적 손해배상에 제한을 두는 것이다.

제조물책임법에 대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은 각 주정부에서 일반불법행위법의 개혁을 주도하는 계기가 되었다. <표 3-1>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각주의 개혁내용은 각각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비경제적 손해에 제한을 두거나, 연대책임을 제한하거나 폐지하고, 징벌적 배상에 대한 입증책임을 엄격하게 하는 등을 주

17). 기업파산이나 철수사례는 신광식·구본천(1996) 참고.

18). 최병록(1994) p.50-57

19). 대표적인 것으로는 카스텐(Robert W. Kasten)법안, 상원상무위원회 법안, 리차드슨(William B. Richardson)법안등이 있다. 이중 카스텐법안의 주요 특징은 제조상의 결함에 대해서는 엄격책임원칙을 채택하는 반면, 설계상의 결함과 경고상의 결함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과실책임원칙을 채택하고 있다. 이외에도 2년간의 제고기한과 25년의 법정책임기간을 정하고 있으며, 징벌적배상을 부과할 것인가는 배심원이 결정하지만, 배상액은 법원이 정하도록 하고 있다. 상무위원회법안의 특징은 제조물책임소송사건을 신속하게 처리하고 분쟁해결비용의 절감을 위하여 즉결화해절차(expedited product liability settlement)를 도입하고 있다. 그리고 즉결화해절차를 신청할 수 있는 손해는 10만달러한도로 위자료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한도를 정하고 있다. 또 일반소송절차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피고의 ‘의식적이고 현저한 무관심’을 ‘명백하고 확신할 만한 증거’에 의해 입증해야 한다. 리차드슨법안의 특징으로는 소액간이절차를 인정하여 1만달러미만의 제조물책임소송에 대해서는 통상의 소송절차와 별도로 화해의 권유, 약식절차, 경비절감을 목적으로 하는 소액청구절차를 정하도록 하는 위무를 법원에 부과하고 있다. 또 다른 특징으로는 중재절차제도의 도입이다.

내용으로 하고 있다.

미국의 제조물책임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은 연방정부, 주정부 차원 뿐만 아니라 의회에서도 계속 논의되고 있다. 1996년에 의회에서 제조물책임법에 대한 개선안이 검토되고, 새롭게 마련된 ‘제조물책임개혁법안(commom sense product liability legal reform act of 1996)’이 상하원 모두를 통과한 바 있다.²⁰⁾

20). 이 법안의 내용은 지나친 소송건수와 소송비용 그리고 손해배상이 미국기업의 국제경쟁력을 약화시킨다고 지적하고 있으며, 이 법을 입법하는 목적은 상품과 서비스의 자유로운 유통과 기업의 부담을 줄이며, 헌법적으로 보장된 소송절차권을 증진시키기 위함이라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이 법안은 클린턴 대통령의 거부권행사로 부결되었다. 최병록(1996) 참고.

<표3-1> 각주의 불법행위법 개혁 내용(1986)

주 명	개 혁 내 용
알래스카	비경제적 손해에 대한 모든 경우에 50만달러로 제한 ;연대책임제한; 정액지불대신 분할지불 승인
아리조나	주류시설 책임제한
캘리포니아	비경제적 손해에 대한 연대책임 폐지
콜로라도	연대책임 폐지;징벌적 손해 제한;주류시설 책임제한
코네티컷	연대책임,변호사비용, 시고용인의 책임제한 ; 분할지불승인
델라웨어	면책조항 확대
플로리다	비경제적 손해는 45만불로 제한;징벌적 손해 제한;비경제적 손해에 대한 연대책임 폐지와 경제적 손해 제한; 경제적 요인이 25만불을 초과하면, 50만불을 초과하는 총 보상에 대하여 분할지불의무
하와이	고통에 대한 보상은 37만5천불로 제한 ;연대책임은 자동차, 재산손해, 환경적 요인을 제외하고 과실의 25%로 피고에게 제한
일리노이	의학적 남용 또는 환경요인 또는 의료비를 넘는 보상을 제외하고 연대책임은 과실의 25%인 피고에 제한; 지방정부책임 제한
인디애나	주류시설책임제한; 비영리법인의 보험으로 해결안된 부분에 대해 면책이 주어짐
아이오와	징벌적 손해 제한; 판사의 재량으로 분할지불 가능 ;주류설비와 시고용인책임 제한
캔사스	비경제적 손해는 25만불로 제한 ;의료남오용에 대한 총손해는 1백만불로 제한
메인	부당의료행위 소송 심사; 25만불이상에 대한 보상은 분할지불 요구; 부당의료행위에 대한 변호사비 제한, 주정부와 계약하에 있는 의료진의 책임면제
메릴랜드	모든 비경제적 손해는 35만불로 제한
매사추세츠	부당의료행위에 대한 비경제적 손해는 50만불로 제한
미시간	부당의료행위에 대한 비경제적 손해는 22만 5천불로 정함;연대책임 제한
미네소타	육체적 고통을 제외한 미미한 손실에 대한 손해에 대해 40만불로 제한;
미시시피	지방정부는 책임면제
미주리	부당의료행위에 대한 손해는 35만불로 정함
뉴햄프셔	징벌적손해는 철회; 비경제적 손해는 87만 5천불로 제한
뉴멕시코	주류설비책임손해는 5만불로 한정
뉴욕	비경제적손해에 대한 연대책임은 50%이하 책임이 있는 피고는 제한; 25만 불이상의 보상에 대해서는 분할지불 요구
오클라호마	징벌적 손해는 보상적 손해를 초과할 수 없음
사우스 다코타	부당의료행위에 대한 모든 손해는 1백만불로 한정;권소시움의 손실에 대한 보상은 10만불로 제한 ;5만불이상에 대한 모든 보상에 대해 분할지불 요구
테네시	주류설비책임은 제한; 정부운영위원회와 비영리단체에 대한 책임 제한
유타	연대책임 폐지; 주류설비책임은 제한; 부당의료행위에 대한 비경제적 손해는 25만불로 한정; 부당의료행위에 대한 분할지불 허용
버지니아	운송구역의 책임은 보험액내로 하거나 2만 5천불로 제한
21) 워싱턴	연대책임 폐지;모든 배경제적 손해는 제한; 변호사비용은 판사에 의하여 심사; 분할지불 인정; 주류설비책임 제한; 하교운영위원과 병원장은 면책권이 주어짐
웨스트 버지니아	의료부당행위에 대한 비경제적 손해는 1백만불로 한정; 시에 대한 비경제적 손해보상은 50만불로 제한; 시책임소송에서 징벌적 손해 폐지
위스콘신	의료부당행위에 대한 비경제적손해는 1백만달러로 한정; 이런 경우 변호사 비용 제한
와이오밍	연대책임 폐지; 주류설비책임 제한

자료 : *Law and Economics*, p. 458

21). Robert Cooter & Tomas Ulan(1988)

2. EU의 제조물책임제도

(1) 역사와 배경

유럽의 여러나라들도 이미 각국의 제조물책임법의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다. 대부분의 유럽국가들은 제조물의 결함에 대한 제조자의 책임에 대해 전통적으로 과실책임원리에 근거를 두고 있다.²²⁾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프랑스, 벨기에, 룩셈부르크의 경우에는 제조물책임에 대한 특별법은 존재하지 않지만, 결함상품에 대한 기업의 책임을 넓게 인정하고 있다. 즉 계약책임을 기업과 직접 계약관계를 맺고 있지 않은 소비자에게 까지 확대·적용함으로써 무과실 책임을 채택하고 있다. 특히, 프랑스에서는 악의의 매도인에 의한 계약상의 책임규정에 의하여 직업적 매도인의 악의추정과 소비자의 제조자에 대한 직접소권을 인정하는 판례법이 형성되어 과실책임에 의한 제조자의 책임을 추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에 비해 이탈리아는 고전적인 과실책임을 유지하고 있어서 결함상품에 대한 기업의 책임이 엄격하지 않다. 영국, 독일, 네델란드 등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주로 불법행위법에 기초한 과실책임주의에 입각하고 있으나 과실의 추정 등의 방법으로 입증책임의 경감 내지 전환을 시도함으로써 중간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²³⁾

그러나 1960년대 유럽에서 대규모 피해를 가져 온 사리드마이드(thalidomide)사건²⁴⁾을 계기로 결함상품에 대한 제조자의 책임문제의 검토가 이루어졌고, 결함상품에 대한 유럽국가들의 실체법 통일을 추진하게 되었다. 그 이유는 제조물책임법의 차이로 인해 제조자의 제조비용에 차이가 발생하여 경쟁조건이 달라지면 EC지역내의 제조물의 유통이 저해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EC내에서 경쟁조건을 동일화하여 유통을 촉진시킬 뿐만 아니라 동일하게 소비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관점에서 가맹국간의 법률 조정이 필요하게 되었다.

EC는 1968년 부터 통일제조물책임법안의 검토가 시작되어 여러차례 수정절차를 거쳐 1985년에 최종지침이 완성되었으며, EC 통일제조물책임법안은 전체 회원국에 대해 국내 제조물책임법을 통일하기 위한 지침이다.²⁵⁾ EC지침에 의하면 3년 이내에 지침에 따른 국

22). 김성탁(1991)

23). 독일의 경우 1968년 11월 연방대법원이 제조자의 과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전환된다는 판결을 한 바 있으며, 1978년 약사법개정에 의하여 의약품제조자의 무과실책임을 입법화하고 있으나, 기본적으로는 과실책임의 원칙에 입각하고 있다.

24). 독일의 그뤼텐탈사가 개발한 수면제의 부작용으로 인하여 태아가 기형으로 태어난 사건이다. 1960년대초 부터 세계 각국에서 피해가 발생하여 사회적문제가 되었는데 특히 서독은 피해가 커서 그 피해자수가 3천명- 5천명으로 추정되고 있다. 1968년 민사소송이 제기되어 2년후 화해로 끝이났지만 그 화해액은 제조자 1억 마르크, 연방정부 1억마르크로 총액 2억마르크나 되는 거액이었다.

내법을 정비하고 시행하도록 되어있다. 그러나 영국 등 3개국만이 입법하였고 프랑스는 입법작업중에 있다. EC가 통일제조물책임법을 만드는데 오랜 시간이 걸린 이유는 각국이 채택하고 있는 기존의 제조물책임법과 EC 통일제조물책임법안과 상당한 차이가 있었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조정과정에서 가장 쟁점이 되었던 내용은 첫째, 제조물책임의 적용대상을 의약품이나 농산물을 포함한 모든 동산으로 적용할 것인지, 그리고 이들 동산 모두에 대해 무과실책임을 적용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이다. 둘째, 개발위험에 대한 것으로 당시의 과학·기술의 수준에서 발견할 수 없는 결함이 제조물에 내재하고 있는 경우에도 기업에 대한 책임을 부과할 것인지에 대한 개발위험에 대한 항변의 인정여부에 관한 것이다. 셋째, 인적 손해만이 아니라 물적손해도 포함시킬 것인지에 대한 손해의 범위에 관한 것이다. 넷째, 인적·물적 손해에 관해 각각 총액 또는 1인당 배상액에 한도를 정할 것인가 하는 책임한도 설정에 관한 것이다.²⁶⁾

(2) 주요 내용

앞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각국은 EC 통일제조물책임법의 제정과정에서 의견대립이 있었지만 각국의 국내법에 의해 선택의 여지를 넓게 인정하여 EC 통일제조물책임법이 완성되었다. 쟁점이 되었던 사항을 중심으로 EC 통일제조물책임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책임원칙은 제조자가 모든 동산(단 제1차 농산물 및 수렵물은 제외한다)의 결함에 의해 발생한 손해에 관하여 책임을 지도록 하는 무과실책임을 인정하고 있다. 제조물책임법의 적용대상은 '공업적으로 생산된 동산'이며, 제1차 농산물(축산물, 해산물 포함) 및 수렵물은 원칙적으로 제외되어 있다. 둘째, 개발위험에 대해서는 제조물이 유통되는 시점의 과학기술수준을 결함발견능력으로 삼고 있다. 룩셈부르크와 핀란드 2개국을 제외한 13개 회원국이 개발위험항변을 인정하고 있다. 셋째, 제조자가 배상책임을 부담하는 손해는 제품의 결함에 의해 발생한 인적손해 및 재산손해이다. 재산손해의 경우 제품자체의 손해는 제외되며, 피해자가 개인적 사용 소비를 위하여 이용되는 재산에 발생한 손해액이 500 ECU 이상의 손해에 대해서만 배상책임을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 또 위자료 등의 무형손해에 대해서는 각 가맹국의 국내법에 그 취급을 위임하고 있다. 넷째, 각 회원국은 동일한 결함을 가진 동종의 제조물에 의한 사망 또는 신체상해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제조자의 책임총액을 7000만 ECU를 하회하지 않는 액으로 제한하고 있다. 책임한도액을 설정하고 있는 나라는 4개국으로 독일(1억6천만 DM), 그리이스 (72억drachmas : 약 5,040달러),

25). EC지침은 의견조정을 거듭하다가 대상제품의 범위와 개발항변의 인정여부, 배상한도액의 설정여부에 대해서는 각국의 국내법에 맡기는 형태로 수정안이 발표되었다.

26). 최병록(1994)

스페인(100억 peasta), 포르투갈(100억 escudo)이 한도액을 설정하고 있다.

가입현황을 보면 현재 15개 회원국중 EC지침을 시행하기 위한 법안, 규제 및 행정규정을 구비한 국가는 프랑스를 제외한 14개국이며, 프랑스도 기존의 제조물책임법안과 EC지침과 조화시키기위한 개정작업중에 있다. EU회원국의 법제정시기와 선택사항에 관한 내용을 살펴보면 <표 3-2>와 같다. 다음으로 EC 지침에 의한 영국, 프랑스, 독일의 제조물책임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3-2> EU회원국의 지침시행 및 옵션채택 현황

국가	입법시기 및 현황	입법 형식	선택조항의 채택여부		
			제1차 농산물의 적용 여부	개발위험의 항변채택 여부	책임한도액 설정 여부
영국	1987. 5. 15 제정 1988. 3. 1 시행	소비자보호법	제외	채택	없음
독일	1989. 12. 15 제정 1990. 1. 1 시행	제조물책임법	제외	채택	1억6천만 마르크
프랑스	법안 의회제출 (1990. 5. 23) 상원협의안 (1992. 12. 15)	민법 개정	적용	채택안함	없음
이탈리아	1988. 5. 24 제정 1988. 6. 29 시행	제조물책임 대통령령	제외	채택	없음
스페인	1994. 7. 6 제정 1994. 7. 8 시행	제조물책임법	제외	일부채택	105억 페소
룩셈부르크	1989. 4. 21 제정 1989. 5. 21 시행	제조물책임법	적용	채택안함	없음
벨기에	1991. 2. 25 제정 1991. 4. 1 시행	제조물책임법	제외	채택	없음
덴마크	1989. 6. 7 제정 1989. 6. 10 시행	제조물책임법	제외	채택	없음
네델란드	1990. 9. 13 제정 1990. 11. 1 시행	민법 개정	제외	채택	없음
그리스	1991. 9. 3 제정 1991. 9. 3 시행	소비자보호법	제외	채택	72억 384만
아일랜드	1991. 12. 4 제정 1991. 12. 16 시행	제조물책임법	제외	채택	없음
포르투갈	1989. 11. 6 제정 1989. 11. 21 시행	제조물책임법 령	제외	채택	100억

출처: 「제조물책임법 도입의 법적·사회적 파급효과」, 에서 재인용

영국은 1987년에 소비자보호법이 제정되었는데 이 법은 제조물책임 뿐만 아니라 소비자 안전 및 불법가격표시를 포함한 광범위한 소비자보호법이다. 제조물책임에 대해서는 EC의 지침을 대부분 따르고 있다. 종래 영국에서는 피해자가 제조자의 과실을 입증하지 않으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었으나, 제조물책임법에서는 무과실책임주의를 취함으로써

피해자는 제조자의 과실의 입증없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되었다. 제조물의 범위는 동산 및 전기를 포함하며, 공업적 가공을 거치지 않은 수렵물 제1차 농산물은 그 대상에서 제외된다. 손해는 사망, 인체상해, 부동산을 포함하는 손해를 말하며, 재산상의 손해에 대해서는 개인적인 사용, 점유 또는 소비시에 발생하는 손해에 대해서만 책임을 부담하고, 275파운드 이하의 재산상의 피해에 대해서는 제조자는 면책된다. 또 과학 기술수준에 의한 제조자의 항변을 인정하고 있다.

프랑스는 제조물책임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지 않고 1990년 민법에 '결함제조물에 의한 책임'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여 시행법 초안이 의회에 계류중이다. 이 법의 특징으로는 기존의 민법규정의 적용이 배제되지 않는다는 점과 제조물에 대한 관찰의무가 부과되어 있는 점이 특징이다.²⁷⁾

독일은 계약책임과 불법행위책임에 의하여 제조물 책임을 물어왔는데 불법행위에 의한 제조물책임의 경우 입증책임이 제조자에게 전가되어 무과실책임원칙이 사실상 인정되고 있다. 특히 의약품의 경우 1960년대의 사리드마이드 사건을 계기로 개정약사법이 제정됨에 따라 엄격책임이 적용되어 왔다. 현재의 제조물책임법은 1990년 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개발위험의 항변을 인정하고 있지만, 의약품에 대해서는 독일 약사법이 우선 적용되도록 되어 있다. 또 1억 6천만 마르크(약 8,768 달러)라는 책임한도액이 설정되어 있다. 그러나 이 한도액을 넘는 안전손해 및 위자료에 대해서는 과실책임의 원칙에 의해 민법이 적용된다.

EC 지침은 제조물책임에 대한 통일에는 성공하였으나 쟁점사항을 회원국에 선택의 여지를 부여함으로써 피해자는 자신에게 유리한 법적용을 위해 '관할모색'을 행할 가능성을 남겨 놓고 있다. EC 지침은 제조자의 무과실책임을 인정하고 특약에 의한 면책제한이나 배제를 금지하는 등 기업의 책임을 강화하고 있는 반면, 피해자에게 제품의 결함과 피해와의 인과관계에 대한 입증책임을 부과하고, 개발위험에 대하여 면책의 항변을 인정하고 무형손해에 대해 배상손해를 제외하며, 책임한도액을 규정하는 등에 의하여 기업의 책임이 부당하게 강화되지 않도록 함으로써 기업과 소비자간의 균형을 도모하고 있다. EC지침은 미국의 제조물책임법에 비해 상당히 온건한 수준으로 결정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3. 일본의 제조물책임제도

(1) 역사와 배경

일본은 1994년 제조물책임법을 제정하여 1년간의 유예기간을 두고 1995년 7월부터 시

27). 자세한 내용은 최병록(1994) 참고,

행하고 있다. 일본에서 제조물책임에 대한 문제가 부각된 것은 1970년대 후반 미국에 진출한 일본의 자동차에서 결함이 발견되어 회수명령을 받은 사실에 대한 보도가 주목을 끌면서 부터다. 일본내에서 제조물책임에 대한 대표적인 사건으로는²⁸⁾ 비소함유 우유사건(1955)²⁹⁾을 비롯하여 사리드마이드사건(1963)³⁰⁾, 가네미유사건(1969)³¹⁾, 스몬병사건(1971)³²⁾ 등이 있다.

일본에서 제조물책임에 대한 전통적인 해석방법은 일본 민법의 제709조의 일반불법행위에 의거한 것이었다. 그러나 일반불법행위책임에 의해 제조물책임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소비자가 제조자의 과실을 입증해야하는데 소비자가 제조자의 과실을 입증하는 것이 어렵다는 문제가 제기되면서 제조물책임에 대한 입법론이 대두하게 되었다.

일본에서 제조물책임법에 대한 기초적인 연구의 시작은 ‘제조물책임연구회’라는 조직에서 我妻榮박사를 중심으로하여 처음 제기되었으며, 그후 80년대 후반까지 구체적인 조문형식의 입법안이 수차례 제안되었다. 일본은 70년대부터 제조물책임법안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어 실시되기까지 거의 20여년이 걸렸다.

28). 일본의 제조물책임 소송사례는 한국공업표준협회(1991)참고.

29). 유아용분유에 비소가 함유되어 다수의 유아에 피해가 발생하자 피해자가 제]조회사로부터 지급받은 위로금에 불복하여 제조자에 대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한 사건이다. 결함식품의 선례가 된 사건이나 원고패소 판결을 받았다.

30). 유럽에서도 커다란 사회문제가 된 사리드마이드를 복용한 임산부의 아이가 장애아가 출생한 사건이다. 의약품분야의 선례가된 사건으로 피해자들은 의약회사 및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준비절차과정에서 중지된 사건이다. 그러나 그 후 이 사건을 계기로 재단법인이 설립되어 피해자에 대한 지속적인 구제조치가 강구되었다.

31). 식용유제조에 사용되는 열 매체인 염화지페닐(PCB)을 주성분으로 하는 카네크롤이 기름속에 혼합되어 있어 이것을 식용으로 사용한 원고가 피부, 내장, 신경 등의 질환을 동반하는 전신성 질환으로 인한 피해에 대하여 식용유제조업자, 그 대표자, 카네크롤 제조업자에 대해 불법행위에 근거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이다. 이에 법원은 식용유제조업자에 대해 식품출하이전에 발생한 하자에 의해 사람에게 피해가 미친 경우 그것만으로 과실이 추정되며, 카네크롤에 대한 독성여부에 대한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점이 인정되어 불법행위책임을 진다고 판결했다. 또 대표이사의 경우 대리감독자 책임에 대해서는 제조자의 과실에 대한 불법행위를 인정하였기에 대표자인 대표이사 또한 지휘 감독소홀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인정했다. 카네크롤제조업자의 경우 카네크롤을 제조판매 이전에 그 섭취량, 섭취기간에 따라 인체에 장애를 일으킬 수 있다는 점 및 금속부식의 위험성을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경고 주의사항에 충분하게 기재하지 않은 과실을 인정하였다.

32). 1955년경 부터 원인불명의 신경마비증상을 호소하는 환자가 나타나기 시작하였고, 1963년 경부터 그 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하였는데, 그 원인은 위장약으로 밝혀졌다. 이 환자들이 제약회사와 제조를 허가한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제기한 사건이다. 이 사건은 전국적으로 이루어졌으며, 일본사상 유례없는 거액소송이 되었다. 법원은 제약업자에게 안정성 확보 의무와, 피해발생을 예견할 수 있었던 점을 들어서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것으로 인정하였다. 국가에 대해서도, 제조승인시 위험가능성을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국민의 안전을 위하여 규제권한을 행사하지 않은 점과, 위험한 결과를 회피할 수 있는데도 그 의무를 태만히 한 점을 들어 부분적인 배상책임이 있다고 판결했다.

<표 3-3> 일본의 제조물책임법 입법안 비교

입법제안주체	공표년월	주요쟁점					
		부동산의 법적용	결함추정 규정	인과관계 추정규정	개발위험 의 항변	재산손해 의 범위	징벌배상 규정
제조물책임법요강시 안(제조물책임연구 회)	1975. 8	○	○	○	부정	제한	×
제조물책임법에의 제안(일본사학회보 고자 그룹)	1990. 10	×	○	○	부정	제한	×
제조물책임법시안(동경변호사회)	1991. 1	○	○	○	부정	무한	○
제조물책임법요강 (일본변호사연합회)	1991. 3	○	○	○	부정	무한	○
제조물책임법 (공명당)	1990. 2	○	○	○	부정	무한	×
제조물책임법제정에 관한 대강 (사회당)	1991. 10	○	○	○	부정	무한	×

자료 : ‘제조물책임의 법리와 입법방향에 관한 연구’ 에서 재인용

(2) 주요 내용

일본의 제조물책임법의 내용을 보면, 이 법의 목적은 ‘제조물의 결함에 의해 사람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관계된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에 제조업자 등의 손해배상에 관한 책임 등을 규정한 법으로써 제품의 결함 → 인적 물적손해 → 배상책임이라는 제조물책임법의 내용을 표현하고 있다. 제조물의 대상으로는 ‘제조 또는 가공된 동산’으로 정의 함으로써 서비스의 하자는 포함하지 않고 있다. 결함에 대한 정의는 ‘해당 제조물이 통상 지녀야 할 안전성이 결여되어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책임원칙에 대해서는 ‘제조물의 결함에 의해 타인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을 침해했을 때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함으로써 대부분 국가가 택하고 있는 무과실책임원칙을 택하고 있다. 손해배상에 대해서는 순수한 경제적 손해는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³³⁾ 입증책임에 대해서 일본의 제조물책임법은 결함과 손해사이의 인과관계증명책임에 대해 언급이 없다. 따라서 이 경우 민사소송법의 원칙에 따라 원고가 증명책임을 지게 된다. 대신 그 대체 수단으로서 재판사안에 따라 사실상의 추정을 활용하고 있다. 개발위험의 항변에 대해서는 ‘해당제품을 인도한 시기의 과학 또는 기술에 관한 지식수준으로는 해당 제조물에 그 결함

33). 예를 들면 어떤 상품에 뜻하지 않은 결함이 발생되어 그 상품을 대량으로 구입했던 판매업자가 가계를 폐쇄할 수 밖에 없게 된 경우, 그로 인한 손해를 과연 본법하에서 청구할 수 있을 것인가하는 문제에 대해 국민생활심의회 답신에서 그런 것은 제외해야 할 것이라고 답하고 있다.

이 있다는 것을 인식할 수 없었던 것'을 증명했을 때는 책임을 면하는 개발위험의 항변을 인정하고 있다.

일본의 제조물책임법의 시행에 있어 특기할 만한 것은 사업자 단체별로 재판외 분쟁처리기구를 설치 운영하고 있는 점이다. 재판외적인 분쟁해결제도는 소송제도가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드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도입된 제도이다. 이러한 분쟁처리기구는 각 지방에 있는 고충처리위원회에서 제품분야에 관계없이 상담을 받고 있으며, 통산성의 주관하에 각 산업별로 PL센터를 설립하여 현재 10개 PL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제조물책임법 시행 후에 상담건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나 실제로 소송중인 사건은 1996년 3월말 현재 1건밖에 없다.³⁴⁾

<표 3-4> 제품분야별 PL센터

분쟁해결기구명	대상제품	업무 및 시작일
가전제품 PL 센터	원칙적으로 가전제품	상담·알선 : 95. 1 재정 : 95. 4. 3
자동차 제조물책임 상담센터	자동차	상담·알선·재정: 95. 4. 3
가스·석유기구 PL센터	가스 석유기구	상담·알선 : 95. 4. 3 재정 : 95. 6. 1
소비생활용품 PL센터	소비생활용품전반(SG마크대상 제품 및 그 유사품)	상담 : 95. 6. 1 알선 조정 : 95. 7. 3
화학제품 PL센터	화학제품(다만, 의약품, 화장품, 식품, 건재는 제외)	상담 알선 : 95. 6. 1
생활용품 PL센터	생활용품전반(가구, 유리제품, 식탁, 주방용품, 플라스틱제품, 문방구, 완구, 낚시도구, 운동기구, 장신구, 구두, 악기)	상담 알선 : 95. 7. 3 재정 : 95. 8
주택부품 PL센터	주택부품	상담 알선: 94.9.1 조정: 95. 1. 5
의약품 PL 센터	의약품	상담 알선 조정 : 95. 9. 4
방재제품 PL센터	방재용설비·기기, 방재물품제품, 위험물용기 등의 방재제품	상담 알선 조정 : 95. 7. 1
청량음료 상담센터	모든 청량음료	상담 알선 조정 : 95. 9. 1

자료: 「제조물책임법 도입의 법적·사회적 과급효과분석」에서 재인용

4. 각국의 제조물책임법 비교

제조물책임법에 대한 미국 일본 EC지침을 비교해 보면, 소비자와 제조자의 관계에 있

34). 원고가 청경음료수의 종이용기를 여는 과정에서 상처를 입은 사건으로 용기구조에 결함이 있다고 주장하는 사건이다. ‘일본최초의 제조물책임소송 방청기’

어 제조자의 책임을 강화하는 기본적인 틀에는 거의 차이가 없으나 그 구체적인 내용에서는 차이가 있다. 제조물책임법에서 논의의 대상이 되는 제조물의 범위, 책임원리 등 쟁점 사항을 중심으로 비교하면 <표 3-5>와 같다.

<표 3-5> 각국의 제조물책임법 비교

국가	미국	EU지침	일본	한국(소보원안)
결합정의	소비자가 예측할 수 없는 불합리하게 위험한 경우	제조물 표시, 합리적으로 예측할 수 있는 상황에서 제조물사용, 제조물의 유통시점을 모두 고려한 다음 정당하게 예기되는 안전성을 제공하지 않은 경우	제조물의 인도시기, 기타 제조물에 관련된 사항을 고려하여 제조물이 통상 지녀야 할 안전성 결여	제조물의 성질, 사용방법 등에 대한 설명, 지시, 경고, 기타표시, 합리적으로 예상할 수 있는 제조물의 사용, 제조물의 유통시기를 모두 고려하여 그 제조물에서 일반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안전성의 결여
책임원리	엄격책임	무과실책임	무과실(결합)책임	무과실(결합)책임
입증책임	소비자(피해자)	소비자(피해자)	소비자(피해자)	제조사(법률상 추정규정)
개발위험의 항변	16개주 채택	옵션으로 각국이 채택 자유가 있음	채택	채택
손해의 범위	소비자 또는 재산상 손해	사망, 신체상 손해	규정없음 (물질적 정신적손해 포함)	규정없음 (물질적 정신적손해 포함)
손해배상 청구시한	인신 상해 1-6년 재산 손해 1-10년	3년	3년	3년
책임기간	대부분 5-12년	유통시점부터 10년	제조물 인도 시점부터 10년	유통시점부터 10년

그 밖에 제조물책임제도로 인한 소송건수에 대한 과급효과를 살펴보면 각 나라의 제도에 따라 약간씩 다르게 나타난다. 미국의 경우 변호사수가 많고 소송비용이 낮아서 소송이 용이하며, 변호사의 성공보수제와 원고에 상대적으로 유리한 재판제도 등으로 제조물책임에 대한 소송건수가 엄청나게 증가하였고³⁵⁾ 이로 인해 제조물책임소송의 개선을 위한 ‘민

35). 제조물책임소송의 사건수는 연방법원의 경우 1974년에 1,579건 이었던 것이 1988년에 17,140건에 달하게 되어 14년간 약 10배 이상의 증가가 있었다. 최병록(1996)

사제도 개혁제안을 하기도 하였다³⁶⁾. 이에 비해 유럽은 미국에 비해 변호사수가 비교적 적고 성공보수제를 금하고 있으며, 원고에게 유리한 디스커버리 제도도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어서 미국과 같은 소송증가는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일본의 경우 제조물책임의 도입으로 상담건수는 늘었으나 소송건수는 아직 증가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IV. 제조물책임제도의 경제적 효과와 시행에 따른 문제점

1. 제조물책임의 경제적 효과

제조물책임에 대한 경제적 분석은 불법행위의 경제적 분석에 대한 기존의 연구에서 찾아볼 수 있다. 즉 불법행위법의 경제적 효율성을 평가하는 분석 틀로 제조물책임의 경제적 효율성이 설명될 수 있다.

불법행위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를 한 캘러브레이시(G. Calabresi)에 의하면 불법행위법 중 사고법의 목적은 사고비용의 최소화에 있다고 주장한다³⁷⁾. 제조물책임법도 불법행위법의 특수한 형태임을 감안하면 제조물책임법의 목적 역시 총사고비용의 최소화에 있다고 할 수 있다. 다음은 불법행위법의 효율성문제를 중심으로 제조물책임의 경제적 효율성을 살펴보기로 한다.

(1) 제조물책임과 경제적 효율성

제조물책임을 보는 경제학적 관심은 제조물 사용으로 인한 손해를 누구에게 부담시키는 것이 사회적 총비용을 최소화하는 효율적인 결과를 가져오는가에 있다.

즉 제조물책임으로 인한 손해에 대해 배상을 하도록 함으로써 피해구제를 용이하게 하는 것도 중요한 목적이지만, 이러한 배상은 제조자로 하여금 제품의 안전성에 대한 주의를 높임으로써 피해의 발생을 줄이도록 하는 것이 제조물책임의 목적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피해발생을 줄이기 위해서는 비용이 발생하게 되는데 제조물책임의 경제적인 관심

36). 엘 고어(Al Gore)부통령을 위원장으로 하는 경쟁력위원회는 기업에 대해 지나치게 엄격한 제조물책임소송을 포함한 민사소송이 미국의 경쟁력을 저하시킨다는 관점에서 주로 제조물책임제도의 소송제도에 대한 개선안을 마련하여 1991년 8월에 공표하였다. 개혁의 주된 내용은 재판전의 증거개시요구의 제한, 징벌배상금의 상한 설정, 패소자측의 소송비용 전액부담원칙의 제한, 전문가 증인의 적절한 활용, 조정, 중재 등의 소송외적인 해결방법의 활용 등이다. 최병록(199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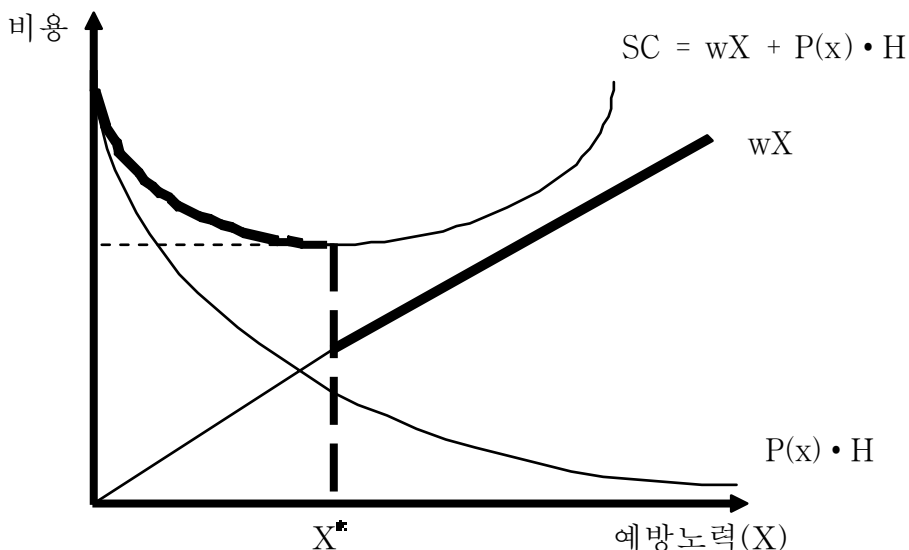
37). 박세일(1994), pp.276-286.

은 이러한 피해예방비용과 피해로 인한 비용의 합을 극소화시켜 경제적 효율성을 극대화시키는 것이다. 총사회비용을 최소로 하기 위한 경제적 분석을 보면 다음과 같다.³⁸⁾

어떤 제품을 사용하다가 제품의 안전성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했다고 가정하자. 이 경우 제조자가 피해에 대한 예방노력을 하면 사고를 줄일 수 있다고 하자. 그리고 제조자가 예방노력을 하기 위해서는 일정비용이 발생한다고 가정한다. 제조자가 취하는 피해예방노력을 X 라고 하고 X 가 한단위 늘어날수록 예방비용도 wX 로 선형적으로 증가한다고 가정하면, 예방비용은 wX 로 표시할 수 있다. 피해는 확률적으로 발생한다고 가정하고 제조자가 실제로 피해를 발생시킬 확률을 P 라고 하자. 그런데 이 확률이 제조자의 피해방지능력에 따라 좌우된다고 하면, X 의 함수인 $P(x)$ 로 표시할 수 있다. 그리고 소비자에게 피해가 발생하면 H 만큼의 비용이 발생한다고 가정하자. 이때, 제조자의 행위로 부터 발생하는 피해의 기대치는 $P(x) \cdot H$ 로 표시할 수 있다. 제조자의 행위로 부터 발생하는 총사회비용의 기대치 SC 는 예방비용과 기대치를 더하여 계산하면, $SC = wX + P(x) \cdot H$ 가 된다. 여기서 경제적 효율성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SC 가 최저값을 갖도록 하는 X 를 찾는 것이다.³⁹⁾

즉 $w = -(dp/dx) \cdot H$ 으로 표시할 수 있는데, 이는 X 를 늘리는 데 따른 한계비용과 한계수익이 같아지는 수준까지 예방노력을 늘여야 하며, 바로 그때가 총사회비용이 최저가 되는 X 라는 것이다. <그림 4-1> 에서 X^* 는 총사회비용이 최소가 되는 점이다.

<그림 4-1> 총사회비용이 최소가 되는 예방노력



38). 김일중(1995) p320 - 333

39). 사회적 총비용은 $SC = wX + P(x) \cdot H$ 된다. 이 SC 를 최소화 하는 X 를 구하기 위해 SC 를 X 에 대하여 1차미분하여 그 결과를 0으로 놓으면, $dSC/dX = 0 = w + (dP/dX)H$ 가 성립해야 한다. 이 식을 정리하면, $w = -(dP/dX)H$ 가 된다. 박세일(1994), pp.290-291.

제조물책임은 X^* 의 예방노력을 하지 않았을 때 책임을 부과하는 것이다. 제조물 책임을 부과하는 책임원리는 여러 가지가 있으며 이 책임원리에 따라 배상범위가 달라지게 된다. 다음은 이 책임원리의 내용을 살펴보고 책임원리에 따른 경제적 효율성을 살펴보기로 한다.

(2) 책임원리에 따른 효율성

1) 책임원리

제조물책임의 내용을 정하는 기준은 제조물책임이 어떤 책임원리를 선택하고 있는가에 따라 그 유형을 나누어 볼 수 있다. 제조물책임과 관련된 책임원칙은 무책임, 과실책임, 무과실책임, 기여과실의 항변을 인정하는 과실책임, 기여과실의 항변을 인정하는 무과실책임, 과실상계(비교과실책임) 등이 있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조자(가해자)가 사고억제를 위해 x 만큼 주의를 기울이고, 소비자(피해자)가 y 만큼의 주의를 기울인다고 할 때, x^* 는 제조자(가해자)가 상당한 주의(due care)를 기울였는지를 판정하는 법적기준이 되는 주의정도를 나타내며, y^* 는 소비자(피해자)의 법적 주의정도를 나타낸다. $x < x^*$ 이면 가해자는 과실이 있는 것으로 판정되며, $x > x^*$ 이면 과실이 없는 것으로 판정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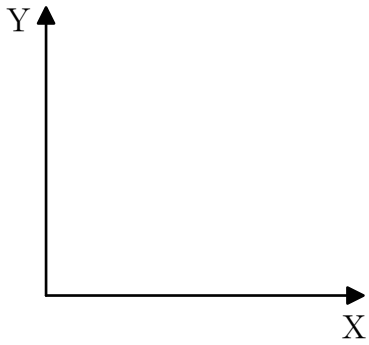
- 1) 무책임원리(no liability)는 X, Y 의 수준에 상관없이 제조자(가해자)는 책임을 지지 않는 경우이다. 이러한 경우 제조자(가해자)는 사고를 회피할 유인을 느끼지 않는다.
- 2) 무과실책임원리(strict liability)는 X, Y 의 수준에 관계없이 제조자(가해자)가 항상 사고 손해의 책임을 지는 경우로써 잠재적 소비자(피해자)가 사고를 회피할 유인을 갖지 못한다.
- 3) 과실책임원리(negligence rule)는 제조자(가해자)가 법적 주의의무수준까지 주의를 하면($X=X^*$) 사고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고, 그 법적 주의의무수준까지 주의를 기울이지 못하면($X < X^*$) 책임을 지는 원리이다.
- 4) 기여과실의 항변을 인정하는 무과실책임원리(strict liability with contributory negligence)의 경우로, 제조자(가해자)의 무과실책임을 원칙으로 하되 피해자가 법적 주의의무수준까지 주의를 기울이지 아니한 경우에는($Y < Y^*$) 제조자(가해자)의 책임을 면제시켜주는 책임원리이고, 소비자(피해자)가 법적 주의의무수준까지 주의를 기울이면($Y=Y^*$) 제조자(가해자)는 항상 책임을 지는 원리이다.
- 5) 기여과실의 항변을 인정하는 과실책임원리(negligence rule with contributory negligence)로 과실책임원리를 원칙으로 한다. 즉 소비자(가해자)는 법적 주의의무수

준까지 주의를 기울였거나, 법적 주의의무수준까지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더라도 소비자(피해자) 역시 자신에게 부과된 법적 주의의무수준까지 주의를 기울이지 아니한 경우에는($X = X^*$ 혹은 $Y < Y^*$) 제조자(가해자)의 책임을 완전히 면제시켜 주는 원리이다. 반면 피해자는 법적 주의의무수준까지 주의를 기울이고 제조자(가해자)는 법적 주의의무수준까지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 경우($X < X^*$ 그리고 $Y = Y^*$) 제조자(가해자)가 책임을 지는 책임원리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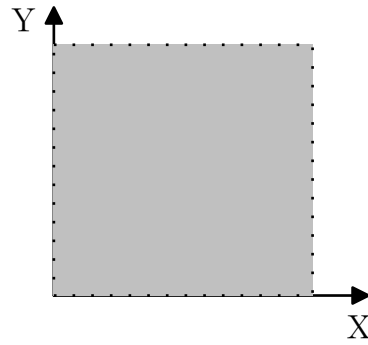
- 6) 과실상계(비교과실: comparative negligence)는 제조자(가해자)와 소비자(피해자) 모두가 법적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에 서로 함께 책임을 지는 원칙으로 그 책임의 정도는 각자가 어느 정도 사고발생에 기여했는가, 어느 정도 법적 주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는가에 비례하여 책임을 지는 원리이다. 즉 소비자(피해자)와 제조자(가해자)가 동시에 모두 법적 주의의무수준까지 주의를 기울이지 않은 경우($X < X^*$ 동시에 $Y < Y^*$) 제조자(가해자)와 소비자(피해자)가 함께 책임을 지는 책임원리이다.

<그림 4-2> 책임원리의 종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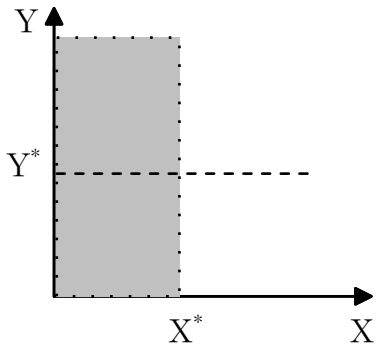
(1) 무책임원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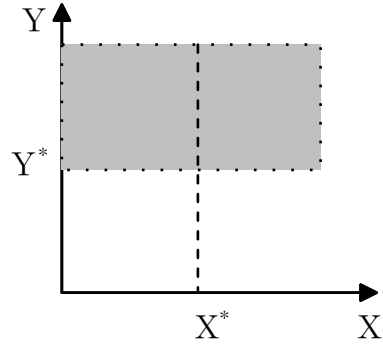
(2) 무과실책임원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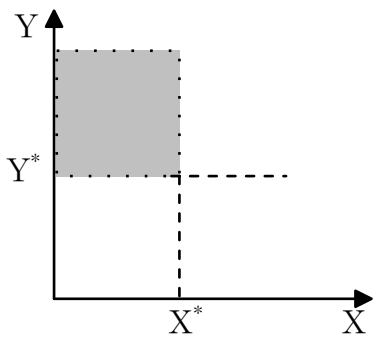
(3) 과실책임원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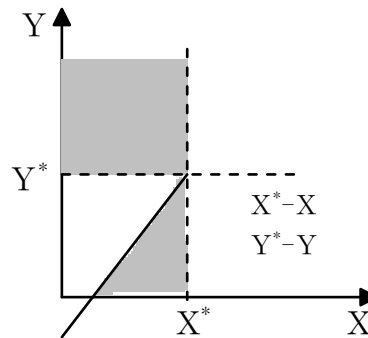
(4) 기여과실항변 인정 무과실책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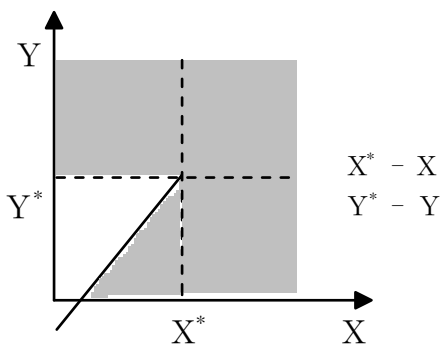
(5) 기여과실항변 인정 과실책임



(6) 과실상계(과실책임과 결합)



(7) 과실상계(무과실책임과 결합)



이러한 유형중에서 불법행위에 대한 가장 엄격한 형태의 무과실책임과 우리나라 현행 민법이 취하고 있는 과실책임을 비교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차이점이 있다.

2) 책임원리에 따른 효율성

현재 우리나라에서 제조물로 인한 손해배상을 받는 사법적인 방법은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을 묻는 방법인데, 제조물책임에 대한 그동안의 판결을 살펴보면 대부분 가해자의 고의나 과실을 피해자인 소비자가 입증해야하는 과실책임을 적용하고 있다. 그러나 소비자보호원에서 제시한 제조물책임법안은 무과실(결함)책임을 채택하고 있다. 제조물책임제도 도입을 주장하는 많은 사람들은 과실책임보다 무과실책임이 잠재적 가해자의 주의수준을 높이도록 유도한다고 생각한다⁴⁰⁾. 그런데 무과실책임이 과실책임보다 가해자나 소비자의 주의수준을 높여서 보다 큰 사고예방효과를 가져오는지 경제학적인 관점에서 살펴보기로 한다.

과실책임은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준 경우에만 제조자(가해자)가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는 책임원리이다. 과실책임하에서 피해자가 손해배상을 받기 위해서는 제조자(가해자)의 과실 및 제조자의 과실과 손해와의 인과관계를 피해자가 입증해야 한다. 반면 무과실책임은 제조자(가해자)에게 과실이 없더라도 그 제조자(가해자)의 행위에 의하여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관계가 있으면, 그것만으로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는 책임원리이다⁴¹⁾.

대부분의 법학자들이 제조물책임에 대해 무과실책임을 주장하는 이유는 무과실책임이 과실책임원칙에 비해서 소비자(피해자)가 제조자(가해자)의 과실을 입증해야 하는 책임을 경감함으로써, 피해배상을 용이하게 하고, 제조자(가해자)의 주의의무를 높여서 사고방지에 더욱 효과적이라고 생각⁴²⁾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무과실책임이 과실책임보다 사고방지에 효과적인지 그 경제적 효율성을 살펴보기로 하겠다.

먼저 과실책임주의하에서 제조자는 일정수준의 예방노력이 의무화 된다. 만약 법원이 정한 의무수준이 X^* 라면 제조자가 X^* 이상으로 예방노력을 하였다면, 사고로 인한 피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고 X^* 이하이면 손해배상을 하는 방법이다. <그림 4-1>에서 살

40). William M. Landes and Richard A. Posner(1987), P64, 박윤직(1994), P617, 최병선(1992), P609.

41). 박윤직(1994), pp.608-609.

42). 무과실책임은 과실책임에 있어서의 주의의무를 가중해 가서는 마침내 그 극한에 도달할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기업이나 행위자는 될수 있는 대로 주의를 베풀고, 설비를 개선해서, 손해의 발생을 막으려고 노력할 것이며, 그 정도는 과실책임에 있어서보다도, 오히려 크게 될 것이다. 즉 무과실책임을 지게 되는 기업이나 사업에 있어서는 무과실책임이 과실책임보다도 경고적, 예방적 기능을 더 잘하는 것이 될 것이다. 박윤직(1994), p.617.

피해보면, 제조자의 입장에서 만약 예방노력을 X^* 미만으로 했다면 제조자에게 과실이 있으므로 사고에 대한 피해를 전액 배상해야 한다. 이때, 비용의 기대치는 X^* 좌측에 위치한 SC가 된다. 만약 제조자가 X^* 이상으로 예방노력을 했다면, 서로 피해에 대해서 책임이 면제되므로 제조자의 비용은 X^* 우측에 위치한 wX 가 된다. 이 그림에서 특기할 만한 사항은 예방노력이 조금만 작아져도 비용이 SC로 점프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제조자는 예방노력을 X^* 수준으로 유지하는 것이 비용을 극소화하는 방법이다. 즉 법원이 X^* 수준만 잘 정하면 과실책임원리는 경제효율성을 가져온다.

그러나, 과실책임주의가 제대로 작동하려면, 사회의 최적 수준의 예방노력수준을 법원이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어야 한다. 다시 말해서, X^* 가 잘못 책정되면 제조자는 과다, 과소 예방노력을 할 것이고 두 경우 모두 총사회비용이 SC^* 를 초과하므로 경제효율성을 달성할 수 없게 된다.

무과실책임원리의 효율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무과실책임하에서는 제조자가 얼마나 예방노력을 했는지에 대해서는 관계없이 제조자가 책임을 지게 된다. 무과실책임하에서는 예방노력에 대한 법적인 주의의무수준과 관계없이 관련된 사고에 대해 제조자가 책임을 지게 되므로 제조자가 직면하는 실질적인 비용곡선은 SC가 된다. 다시 말해서 과실책임하에서는 X^* 의 오른쪽에서 wX 로 대체되었지만, 무과실책임하에서는 SC가 비용곡선이 된다. 따라서 SC가 제조자의 비용곡선이므로, 제조자는 이 SC가 최소가 되는 X^* 를 찾아내어 그 수준만큼 예방노력을 하게 된다. 무과실책임이 아니었다면, 소비자에게 외부비용으로 부담해야 할 피해가 제조자에게 내부화되는 셈이다.

무과실책임이 경제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첫째, SC가 제대로 측정된다는 가정하에서 가능하다. SC를 구성하는 두 요소는 wX 와 $P(x) \cdot H$ 이다. 이 중 wX 는 제조자가 직접 정보를 얻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으나 $P(x) \cdot H$ 의 경우 법원이 잘못 측정하기 쉽다. 즉 소비자의 피해를 법원이 정확하게 판단하지 못하면, H가 과대 평가되거나 과소 평가될 수 있다. <그림 4-1>에 따르면, 만약 H가 과대 평가되면 SC가 우상향하고, H가 과소평가되면 SC가 좌하향하게 된다. 따라서 잠재적인 제조자의 최적 예방노력도 각각 X^* 보다 작거나 또는 크게되어 총사회비용을 최소화하는 수준보다 과소, 또는 과대 수준에서 예방노력이 결정되게 된다. 무과실책임하에서는 실제 피해액에서 조금만 초과되거나 미달되면, 그때마다 SC가 이동하고 따라서 경제효율성이 깨어지게 된다. 따라서 무과실책임하에서는 법원이 실제 피해액을 정확하게 산정할 수 있어야 한다.

둘째, 무과실책임의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사고발생이 제조자와 피해자 쌍방의 과실 모두에 의존하는지 검토해야 한다. 예를 들어 소비자가 어떤 기계를 사용중 사용상의 부주의로 사고가 발생한 경우를 가정해 보자. 이 경우 법원이 기계 제작자인 제조자에게

모든 책임을 부담시키는 무과실책임을 채택하면, 제조자의 예방노력은 증가하겠지만, 사용자의 예방노력에 대한 인센티브를 유발시키지 못하므로, 사용자의 도덕적 위해(moral hazard)가 발생한다. 반면, 과실책임하에서는 제조자와 소비자(피해자) 모두에게 법정 예방노력의 수준을 부과하고 법정 예방노력 수준에 미달되는 노력을 한 사람에게 책임을 부과하게 되므로 도덕적 위해를 피할 수 있다.

따라서 무과실책임을 사고의 속성이 다분히 일방적인 경우에 적용돼야 경제적 효율성을 확보할 수 있다. 사고발생을 억제하는데 피해자가 더 큰 비교우위를 갖는 경우에도 무과실책임을 적용하면 경제효율성은 더욱 왜곡되게 된다.

2. 소비자보호원의 제조물책임법

(1) 제조물책임 논의 과정

우리나라에서는 1980년 1월 소비자보호법이 제정됨에 따라 소비자의 피해구제를 강구하게 되었고, 1987년부터 한국소비자보호원이 피해분쟁에 관한 중재역할을 해 왔다.⁴³⁾ 그러나 소비자보호법은 피해를 입은 소비자의 피해에 대한 배상책임규정이나 그 배상책임을 확보하기 위한 책임보험 등에 대해서는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피해를 구제하는 데 미흡하다. 그래서 배상책임에 관한 법적 구제는 민사소송판결에 의존하고 있으나 민법에 의한 피해구제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제조자의 고의나 과실을 피해자가 입증해야 하는 등 소비자의 입장에서 어려운 점이 있다. 최근 소비자보호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이 높은 가운데, 제품사용으로 인한 피해사례는 증가하고 있어서 제조물로 인한 피해 발생시 피해구제를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제조물책임제도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우리나라 최초의 제조물책임 법안은 1982년 2월 金順圭의원에 의하여 국회에 상정된 적이 있으나, 당시의 여건상 시기상조라는 이유로 유보되었다⁴⁴⁾. 그후 1989년 소비자보호원에서 '제조물책임에 관한 연구'⁴⁵⁾라는 보고서를 통해 제조물책임제도의 도입 필요성과 제조물책임법의 입법을 제안한 바 있으며, 이후 행정쇄신위원회에서 한국소비자보호원⁴⁶⁾의 건의를 받아들여 제조물책임법의 입법을 결정하기에 이르렀다. 이후 소비자보호원에서 법

43). 이경현·박인섭(1988), pp.7-11.

44). 황유인(1994), p.40, 김성탁(1991), p.137.

45). 이상정·박인섭(1989).

46). 한국소비자보호원에서 1994년 6월 27일 세미나를 개최해 제조물책임 입법의 기본방향을 제시하고, 그 결과로 한국소비자보호원에서 「제조물책임법의 제정에 관한 연구」(강창경·최병록·박희주)라는 보고서를 통하여 제조물책임법 입법시안이 1994년 12월에 발표된 바 있다.

안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진 후 96년 9월 법안 공청회를 개최하였다. 정부의 계획에 의하면, 97년에 제조물책임법을 입법하여 98년 부터 시행한다는 방침을 정하고 있다. 다음은 공청회에서 제시된 제조물책임법안을 소개하고 평가하기로 하겠다.

(2) 소비자보호원의 제조물책임법안

공청회에서 발표된 제조물책임법은 특별법 형식으로 제안된 것으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목적

제1조에 ‘이 법은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제조자의 배상책임을 정함으로써 소비자피해의 구제를 도모하고, 이로써 소비생활의 안정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밝히고 있는데 그 내용을 정리하면, 제품의 결함→손해 → 배상책임이라는 제조물책임의 기본 골격을 나타내고 있으며, 궁극적인 목적은 결함 제조물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구제에 있음을 알 수 있다.

2) 정의

제2조에 제조물과 제조업자 그리고 결함에 대한 정의가 되어있는데, 먼저 제조물에 대한 정의를 보면 ‘제조 또는 가공된 동산 및 부동산중 분양공급주택’으로 정의하고 있다. 제조물에 분양공급주택을 포함시킨 것이 특기할 만한 것인데 이는 우리나라의 공급관행이나 거래실태에 비추어 공급받는 자가 그 결함여부를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으로 그 취지를 밝히고 있다⁴⁷⁾. 제조자는 제품의 제조자와 수입업자 뿐만 아니라 직접 제조하지 않았어도 제조자로 표시하였거나 제조업자로 오인시킬 수 있는 표시를 한 자도 제조업자로 정의하고 있다.

제조물책임법의 가장 핵심적인 개념인 결함에 대해서는 ‘당해 제조물에서 일반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안전성을 결여하고 있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3) 손해배상책임

제조업자가 결함제조물로 인하여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손해를 입힌 사람에게 책임을

47). 민법상의 하자보수청구권은 부동산의 하자에 대한 보수에 그치고 있으며, 부동산의 결함으로 인한 생명, 신체 또는 재산상의 확대손해의 구제에는 미치지 못하므로 대량으로 공급되고 있는 분양주택을 포함하도록 한 것이다. 공청회자료 1996

지는 근거규정이며,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책임의 '고의 과실'에 대한 책임요건이 '결함'으로 확대된 것이다.

4) 면책사유

제조자가 손해배상책임을 면하게 되는 사유를 규정한 조항으로 그 사유를 5가지로 정하고 있다. 그 사유로는 '제조업자가 당해 제조물을 유통시키지 아니한 사실'을 입증한 경우, '제조업자가 제조물을 유통시킨 시점에는 결함이 없었다는 사실 또는 그 결함이 그 후에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한 경우, '당해 제조물의 결함이 법률이 정한 강제기준을 준수함으로써 발생하였다는 사실과 이 강제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하고 당해 제조물을 제조 또는 가공하는 것은 위법이 된다는 사실'을 입증한 경우, 제조업자가 당해 제조물을 유통시킨 시점의 과학 기술수준으로는 결함의 존재를 발견할 수 없었다는 사실'을 입증한 경우, '부품제조업자의 경우는 그 부품을 조립한 완성품의 설계가 원인이 되어 결함이 발생하였다는 사실 또는 완성제품제조업자의 지시에 따랐기 때문에 결함이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한 경우이다. 가장 핵심이 되는 내용은 미국이나 일본과 같이 개발위험의 항변을 인정하고 있다.

5) 결함의 존재 및 인과관계의 추정

결함의 존재에 대한 인과관계를 규정하는 방법으로 법률상의 추정규정을 두고 있다. 그 내용을 보면, '제조물을 일반적인 방법으로 사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용에 의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제조물에 결함이 존재하고 있었던 것으로 추정' 하며, '제조물에 결함이 있는 경우에 그 결함으로 인하여 생길 수 있는 손해와 동일한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그 손해는 그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추정'하도록 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제조물책임 소송은 기존의 민사소송체계를 따르기 때문에, 피해자인 소비자가 제조물에 결함이 존재한다는 사실, 손해의 발생, 결함과 손해발생과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한다는 것을 모두 입증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 법안에서 규정하는 결함존재와 인과관계의 추정규정은 요건이 만족되면 결함이 있는 것으로 추정하도록 되어 있어서 소비자의 입증부담을 경감시킨 반면, 제조자에게 상대적으로 불리하도록 되어있다.

6) 소멸시효

민법상 불법행위책임에 있어 손해배상청구는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때부터 3년 또는 불법행위를 한 때로부터 10년을 경과할 수 없도록 하고(민법 제766조) 있는데 제조물책임에서도 같은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7)과실상계

일반적으로 민법의 불법행위에서 적용되는 과실상계를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거나 피해자가 결함이 있음을 알고 제조물을 사용한 때에는 법원은 손해배상의 책임 및 금액을 정함에 있어 참작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제조물책임제의 시행에 따른 문제점

이 장에서는 제조물책임제도 공청회에서 제시된 법안에 대한 평가 및 시행에 따른 문제점과 대응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소비자보호원이 제시한 법안이 채택하고 있는 책임원리, 결함에 대한 규정 및 추정 등 법 자체에 대한 것과 제조물 책임을 실시하는데 필요한 제도적 장치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1) 책임원리의 적용

제조물책임에 있어 책임원리는 제조물책임제도의 성격을 규정하게 되므로 매우 중요하다. 기존의 민법체계에서 적용되던 과실책임은 과실에 대한 손해배상을 묻는 반면, 제조물책임의 일반적인 책임원리는 결함에 근거한 책임원리이다. 소비자보호원에서 제시된 제조물책임의 책임원리를 살펴보면, 결함을요건으로 하는 결함책임원칙을 따르고 있는데 이는 미국의 무과실(엄격)책임원칙과 같은 내용이다. 즉 결함의 존재 여부에 따라 제조물로 인한 사고에 대해 제조자가 책임을 지도록 하는 책임원리이다. 앞서 책임원리의 경제적 효과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무과실(결함)책임원리는 기업이 제품에 대한 안전수준을 높이도록 하여 사고를 억제하는데 효과적일 수 있다. 그러나 무과실(결함)책임하에서 사고가 쌍방에 과실이 있는 경우에도 제조자는 사고에 대해 책임을 지므로, 제조자는 사고억제 노력을 하나 소비자는 사고억제 노력을 할 유인에 없으므로 소비자의 도덕적 위해(moral hazard)가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결함책임원리가 경제적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사고의 속성이 일방적인 경우에만 적용되어야 한다. 즉, 사고의 발생을 억제하는데 피해자가 더 큰 비교우위를 갖는 경우에는 무과실(결함)책임원리를 적용하면 오히려 경제적 효율성이 왜곡된다.⁴⁸⁾ 예를 들어 품질이 좋은 식도를 생산하는 업체가 식도사용도중 손이 베인 모든 주부들에게 피해를 보상해줘야 한다면, 이 업체는 식도를 생산하되 날이 무디게 만들거나, 피해보상부담 때문에

48). 김일중(1995)

공장문을 닫는 선택을 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사고가 쌍방에 의하여 발생할 때는 제조자의 무과실책임보다는 과실책임주의를 사용하는 것이 경제효율성을 높이는 방법이 된다.⁴⁹⁾ 그러므로 모든 제품에 무과실책임원칙을 적용하는 것은 경제적 효율성을 확보하지 못하게 되므로 사고방지에 대해 대체로 소비자가 비교우위가 있는 제품은 과실책임을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 외에도 제조물의 성격에 따라 책임원리에 대한 효율성이 달라질 수 있다. 즉, 제조물이 단순 소비재나 내구재냐에 따라 책임원칙에 따른 효율성은 달라질 수 있다. 예를 들면 전열기와 같은 제품은 피해자의 주의수준 뿐만 아니라 사용강도에 의해서도 사고발생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예를 들어 전열기를 매일 1시간씩 사용하는 경우와 10시간씩 사용하는 경우는 기대사고손해액이 다를 것이다. 이 경우에 과실책임하에서 제조자는 배상책임을 면하기 위해 상당한 주의를 기울일 것이고, 소비자는 사고로 인한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용강도를 적절히 하여 사용하게 하는 유인이 존재한다. 그러나 제조자가 결과적으로 사고손해를 부담하게 되는 무과실책임하에서 과실유무의 판정은 통상적 주의정도에 의존하고 사용강도에는 의존하지 않으므로 소비자는 무과실 판정을 받을 만큼의 통상적인 주의수준만을 준수할 뿐 사용강도를 적절하게 사용할 유인을 갖지 않는다. 따라서 소비자의 사용강도가 문제가 되는 내구재의 경우 무과실책임은 사고방지를 위한 소비자의 주의수준을 유도하지 못함으로써 과실책임보다 비효율적이 된다.

또, 제조물에 대한 피해의 배상책임이 제조자에게 있는 무과실책임의 경우에는 배상책임이 소비자에게 있는 경우보다 소비자의 제품선택의 폭을 줄이게 된다. 제조물책임이 무과실책임하에 있을 때 제조자는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의 기대손해배상액을 제품가격에 반영하게 된다. 다양한 종류의 소비자가 존재한다고 할 때, A라는 소비자는 안전에 대한 보장수준이 적더라도 낮은 가격을 선호하는 소비자이고, B라는 소비자는 가격은 높더라도 안전수준을 보장하는 제품을 선호하는 소비자가 존재한다고 하자. 이때, 제품을 생산하는 제조자가 서로 다른 선호를 가진 소비자를 가려내어 각각 다른 가격으로 제품을 공급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다. 결국 제조자는 소비자의 안전을 보장하는 한가지 가격의 제품만을 제공하게 되고, 소비자는 잠재적 피해에 대한 배상을 확보하는 대신에 제품선택의 폭은 줄어들게 된다. 소비자의 피해구제를 높일 목적으로 일률적으로 가장 엄격한 형태의 무과실책

49). 무과실책임하에서 사고의 원인이 쌍방에 있을 경우 소비자의 도덕적 위해를 줄이기 위해 배상수준을 낮추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이것은 배상수준을 실제 피해수준보다 낮춤으로써 소비자로 하여금 예방노력을 증가시키도록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다. 그러나 이럴 경우 소비자는 예방노력을 하게 되겠지만, 제조자의 도덕적 위해가 발동하여 최적예방노력보다 예방노력을 덜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온다. 결론적으로 사고의 원인이 쌍방에 있을 경우 경제적 효율성을 확보하는 것이 어렵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김일중(1995)

임원칙을 적용할 경우 소비자의 제품선택을 제한하므로써 효용이 줄어드는 비효율을 초래하게 된다.

무과실책임은 기업의 배상책임부담을 증가시켜 새로운 비용이 발생하게 된다. 이 비용은 기업으로 하여금 사고발생을 억제하도록 하는 유인으로 작용하기도 하지만 그 비용이 커질 경우 그 제품이나 기업이 존재의 위기에 처하게 되어 산업구조가 재편되는 결과를 초래하기도 한다.

예를 들어 미국에서 일반비행기 제조업은 제조물책임의 확대로 경비행기생산이 1979년 17,048대에서 1988년 1,143대로 감소하였다. 대학팀용 미식축구 헬멧제조업자 수는 1976년 18개사에서 1985년 3개사로 감소하였다. 그리고 아이스하키 방호구의 제조업자는 미국내에 존재하지 않게 되었다.⁵⁰⁾ 다이빙보드의 경우 역시 사고에 따른 배상책임을 부담할 수 없어서 다이빙보드를 만드는 사업이 도태한 사례가 좋은 예이다.

일본의 경우 전자업체인 마쓰시타전기산업은 제조물책임에 대응하여 부품수를 3분의 1로 줄이기로 하고, 새로운 부품 채용을 엄격하게 억제하기로 하였으며, 콘덴서, 저항기, 플러그, 퓨즈 등 18개 품목은 회사 전체에서 공통으로 사용하는 표준부품을 선정하였다. 또 비디오 헤드, 온방기의 히터, TV브라운관에 대해서는 사업부별로 표준을 정하여 용량과 크기에 따라 2천 5백개에 달하는 콘덴서 부품을 10분의 1 수준으로 줄이도록 했다. 마쓰시다가 사용부품수를 대폭 줄이기로 한 것은 제조물책임에 대비해 품질관리를 편리하게 하도록 하기 위함이다.⁵¹⁾

따라서 배상책임이 제조자에게 무거운 무과실책임을 채택할 경우 기업들은 상대적으로 안전성이 높거나, 사고의 위험이 적은 상품만을 선택적으로 생산하게 되고, 제품의 성격상 위험한 요소를 포함하고 있는 제품은 생산을 중단하거나 연구개발을 통한 신제품개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어 산업구조가 왜곡될 가능성이 높다.

(2) 결함유형 및 결함추정

결함책임원칙을 채택할 경우 제기되는 문제는 결함을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 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제조물책임에서 결함은 '제조물에서 일반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안전성을 결여하고 있는 것'으로 정의한다. 여기서 말하는 결함은 하자와는 다른 개념으로 하자는 거래상 또는 사회통념상 갖추어야 할 품질(상품성)이 결여된 상태이고, 결함은 그 하자의 원인이 되어 새로운 손해나 위험성을 발생시킬 가능성이 있는 상태를 말한다. 즉 하자는 상품성의 결여이고, 결함은 안전성의 결여로 구분한다. 이러한 결함개념은 제조물책임제도의 도입으로 새롭게 도입되

50). 신광식 구분천(1996)참고.

51). 중앙일보 1995. 8

는 개념으로 결함유무에 따라 배상책임이 달라지기 때문에 결함에 대한 평가가 중요하다.

기존의 민법체계안에서 과실여부는 소비자가 제조자에 대해 과실이 있음을 입증해야만이 과실이 인정되고 이에 상응하는 배상을 받을 수 있다. 이러한 원고의 입증책임은 결함책임에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그러나 소비자가 제조자의 과실을 입증하기 어려운 점을 인정하여 과실의 인과관계를 추정하는 것이 판례로 인정되고 있다. 이러한 추정은 사실상의 추정과 법률상의 추정으로 추정규정을 인정하고 있는데 사실상의 추정은 사안에 따라 양당사자가 가진 정보량을 감안하여 사실상 입증책임을 피고인 제조업자에게 부담시켜 구체적인 개별사건마다 타당한 해결을 도모하는 것을 말하며, 법률상의 추정은 법률규정에 의하여 일률적으로 피고(제조업자)에게 입증책임을 전환시키는 것을 말한다.

소비자보호원에서 제시된 제조물책임법안은 결함과 인과관계의 추정규정으로 법률상의 추정규정을 두고 있다. 이는 결함의 인과관계에 따른 소비자의 입증부담을 경감해주는 반면, 법에서 결함과 인과관계를 일률적으로 정함으로써 제조자가 과중한책임부담을 지게 된다. 따라서 결함존재에 대한 인과관계추정이 소비자의 입증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것이라면, 법률에서 일방적으로 입증책임을 제조자에게 전환하도록 규정하는 법률상의 추정보다는 개별사건에 따라 법원이 결정하도록 하는 사실상의 추정을 인정하거나, 미국의 디스커버리 제도⁵²⁾와 같은 제도를 민사소송법에 두어서 입증부담을 경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일본의 경우도 최근 민사소송법을 개정하면서 문서제출의무의 범위를 확대하거나 명문화하여 소비자의 입증부담을 경감하는 제도를 도입하였는데⁵³⁾ 이것은 소비자의 입증부담을 줄이고 제조자의 부담을 가중하지 않는 하나의 대안으로 생각된다.

또한 우리나라도 최근 고등법원에서 결함에 대한 사실상의 추정을 인정한 판례가 나온 것을 고려하면, 법률상의 추정으로 법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법원이 사실상의 추정을 하게 되리라는 것을 예측할 수 있다. 더구나 오래 전부터 제조물책임제도를 실시하고 있는 선진외국도 결함을 피해자가 입증하거나 사실상의 추정에 의존하는 점을 감안하면, 법률상의 추정으로 입증책임을 제조자에게 일방적으로 부담시키는 것은 제조자에게만 너무 엄격한 조항이라고 생각된다.

52). 민사소송에 있어서 각 당사자는 서로 상대방의 수중에 있는 소송에 관한 각종 정보의 개시를 요구할 권리가 법률에 의해 보장되어 있다. 제조물책임소송에서 가장 대표적인 수단으로 이용되는 것은 질문서, 문서제출요구 및 증언녹취 등이다. 원고는 이러한 절차를 이용함으로써 제조물의 결함을 입증하는 것이 비교적 용이하다.

53). *ジュリスト*, (1996.10) 참고

<표 4-1> 입증책임에 대한 입법례 비교

국 가		입 증 책 임
미 국		제조물이 결함상태에 있었다는 입증책임은 피해를 입은 원고에게 있음
유 럽	EU	손해, 결함 및 결함과 손해사이의 인과관계에 대한 입증책임은 피해자에게 있음
	영 국	규정없음
	독 일	손해, 결함 및 결함과 손해사이의 인과관계에 대한 입증책임은 피해자에게 있음
일 본		규정없음(민사소송의 일반원칙에 의하게 되므로 입증책임은 피해자에게 있음)
한 국 (소보원안)		제조물을 일반적인 방법으로 사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용에 의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제조물에 결함이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함 제조물의 결함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함으로 인하여 생길수 있는 손해와 동일한 손해가 발생한 때는 그 손해는 그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추정함

소비자보호원에서 제시한 제조물책임법에는 결함에 대한 유형을 구분하고 있지 않으나, 결함은 그 유형에 따라 제조결함, 경고결함, 디자인·설계상의 결함으로 구분하고 이 결함의 유형에 따라 책임부담을 달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제조결함이란 제조물의 제조과정에서 발생하는 결함이며, 원래의 도면·제조방법대로 제조물이 제조되지 않은 경우이다. 제조상의 결함은 본래 품질검사단계에서 발견되어야 할 성질의 것이며, 그러한 품질검사체계의 부주의로 결함제조물이 시장에 유통되었을 때 문제가 되는 경우이다. 경고결함은 제조물이 설계와 제조과정에 아무런 흠이 없는 제조물이라 하더라도 소비자가 사용 또는 취급상의 일정한 주의를 하지 않거나 부적당한 사용 또는 취급을 한 경우에 발생할 위험에 대비하여 적절한 사용·취급방법 또는 경고를 지시하지 않은 경우이다. 설계상의 결함은 제조물의 설계 그 자체에 내재하는 결함으로 도면 설계대로 제조물이 만들어 졌음에도 불구하고 결함으로 판정되는 경우이다. 설계상의 결함이 인정되는 경우 이 설계에 의해서 제조된 제조물 모두가 결함이 있는 것으로 되어 제조업자에 미치는 영향이 심각하다.

결함여부에 대한 판정은 법원에서 이루어지게 되는데, 대부분의 경우 제조상의 결함은 법원이 인지하기 쉽지만 경고상의 결함이나 설계상의 결함은 판정하기 어렵다. 설계상의 결함의 경우 이 설계가 위험을 내포하고 있는지 테스트가 필요하며, 이러한 테스트를 위해서는 상당히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하기 때문에 법원이

이러한 결함여부를 가리기 어려우며, 자칫하면 법원이 자의적으로 해석할 우려가 있다. 또 판정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결함판정을 위한 실험 및 조사에 많은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생각된다. 결함의 유형과 관계없이 결함의 존재여부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지우는 무과실책임을 적용할 경우 제조자에게 너무 과중한 부담을 지우게 된다. 따라서 결함의 유형에 따라 다른 책임원리를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즉, 제조상의 결함에 대해서는 무과실책임을 적용하고, 논란의 여지가 많은 경고상의 결함이나 설계상의 결함은 과실여부에 따라 배상책임을 지는 과실책임을 적용하는 방법을 생각할 수 있다⁵⁴⁾.

또 결함의 존재여부를 가리기 위해 사후적으로 법을 집행하는 비용이 매우 높다면, 과실책임이나 무과실책임과 같은 불법행위법에 의존하는 것보다 이러한 불법행위를 예방하는 통상적인 정부규제가 더 효율적인 방법이 될 수 있다.⁵⁵⁾ 따라서 결함의 존재여부를 가리는데 높은 비용이 드는 경고상의 결함이나 설계상의 결함은 제품에 따라 정부가 제시하는 사전적 규제를 통해 규제하고, 제조자가 이러한 안전기준을 만족시켰다면 면책사유로 인정하는 방법이 더 효율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

(2) 소송비용과 중재기구

무과실책임원리하에서는 거래비용이 감소함에 따라 과실책임원리하에서 보다 소송건수가 증가한다. 과실책임하에서는 소비자가 제조자의 과실을 입증하기 어렵고 과실을 입증하기 위해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소송을 제기하려는 유인이 적다. 그러나 무과실책임의 경우 제품의 결함으로 인한 사고라는 인과관계만 밝히면 제조자에게 배상책임이 있기 때문에 소비자입장에서 볼 때 비용이 적게 들고, 상대적으로 승소확률도 높아서 소송건수가 증가하게 된다. 미국의 경우 1970년대에 기업들이 과다한 소송으로 인한 고액의 배상금을 버틸 수 없어서 도산하거나 배상청구가 두려워 기업을 그만두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했다. 소위 ‘제조물책임위기론(product liability crisis)’⁵⁶⁾이 등장하게 되었고 엄격(무과실)책임을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었다.

제조물책임법의 도입으로 제조업자에게 미치는 파급효과로 가장 먼저

54). 미국의 경우 통일책임모델법(model uniform product liability act)의 초안자들은 제 2차 불법행위 리스테인먼트 제402조의 결함의 정의는 원래 제작상의 결함에 한정하려고 아였던 것이며, 설계상의 결함이나 경고상의 결함에 대해서는 관심을 두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제조상의 결함에 대해서는 엄격책임을 적용하고(제 104조a), 설계상의 결함과 경고상의 결함에 대해서는 과실책임을(제104조 b,c) 부과하고 있다.

55). 김일중(1995)

56). 강창경·최병록·박희주(1994), pp.101-105.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소송비용과 배상액에 대한 부담이다. 미국의 기업경영자에 대한 PL관련 설문조사에 의하면, 배상금, 보험료 등 기업의 PL대응비용이 년 3,500억불을 초과하며, 미국 GNP 중 7%를 차지한다고 답하고 있다. 또 1995년 7월부터 PL법을 시행한 일본에서도 기업경영상 PL이 가장 위험한 요소라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이처럼 제조물책임제도가 선진국에서도 기업에게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제조물책임소송에 대한 기업의 부담에 대해 정부의 입장은 소송으로 인한 기업의 부담이 크게 늘지는 않을 것이라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그 이유로 지적하는 것이 우리나라는 미국처럼 변호사수가 많지 않을 뿐만 아니라⁵⁷⁾ 변호사 비용이 고액이기 때문에 소송이 쉽지 않다는 것이다. 그리고 일본의 경우 제조물책임법 시행이후 제조물책임에 대한 소송이 늘지 않았으며, 96년 3월 현재 계류중인 제조물책임소송이 1건밖에 안된다는 점을 들어 우려할 만한 사항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미국의 경우 1960년부터 1980년까지 과실책임에서 무과실책임으로 변화되면서, 제조자의 승소율이 20%에서 50%로 증가하였으며, 무과실책임의 경우 원고의 승소율이 높아짐에 따라 소송당사자의 화해를 증가시키지 않는다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결과를 고려해 볼 때 우리나라의 제조물책임이 무과실책임을 취하고 있는 것을 감안하면, 원고승소율이 높아짐에 따라 소송이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예측할 수 있다. 또한 앞으로 변호사수도 증가할 전망이어서 변호사수의 제약으로 소송이 증가하지 않을 것이라는 견해는 너무 낙관적인 견해라고 생각된다.

일본의 경우 소송건수가 적은 것은 소송을 싫어하는 사회분위기를 반영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견해도 있지만, 일본의 경우 제조물책임에 대한 중재기구가 산업별로 구성되어 있어서 이들 기관에서 중재를 하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표 3-4>에서 보는 것과 같이 일본은 10개의 제조물책임 상담센터를 설치하여 상담과 알선·조정을 하고 있다.

따라서 제조물책임에 대한 소송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소송전에 당사자

57). 각국의 변호사수(1991)를 비교하여 보면 영국은 약 61,000명(변호사 1인당 국민수: 819명)이고, 프랑스는 약 28,290명(변호사 1인당 국민수 :1,944명), 미국은 약 74만명(변호사 1인당 국민수 : 310명)이며, 일본은 약 14,000명(변호사 1인당 국민수 : 8,570명)이다. 이에비해 한국의 경우 변호사수는 약 3,000명으로 변호사 1인당 국민수는 약 15,000명이다.

들을 소송외적인 해결제도에 의해 중재하도록 하여 소송으로 인한 제 비용을 줄이도록 하는 방법이 대안이 될 수 있다.

(3) 전문성, 안전도 평가기관 및 안전도에 대한 기준 설정

OECD의 소비자정책위원회에서는 제조물책임과 리콜의 실시를 회원국에 권고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OECD가입에 따라 제조물책임제도를 도입해야 하는 상황이다. 정부도 이러한 경제환경변화에 따라 제조물책임법을 97년도에 입법화할 예정있어서 제조물책임제도의 도입은 그 시기와 관계없이 피할수 없는 상황이다.

제조물책임에 대비해서 기업들은 먼저 안전도를 높이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며, 정부는 안전기준을 미국 일본 EU 등과 비교하여 정비할 필요가 있다. 또한 제품이 갖고 있는 위험 및 안전한 사용방법에 관하여 적절히 경고함으로써 사고를 예방하고 경고결함과 관련하여 기업의 경고의무의 범위를 어느 정도 정해 줄 필요가 있다. 정부는 각국에서 사용되는 경고 마크, 제품사용 설명서 등을 분석하여 이를 법에 반영하고 소비자와 기업에게 그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사고위험을 줄일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안전에 관한 법률로서 식품위생법, 독물 및 극물에 관한 법률, 전기용품 안전관리법,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도시가스사업법, 자동차관리법, 품질관리법 등이 있으며, 이들 법률은 관련 제품에 대해 별도의 기준을 만들어 제품의 안전을 기하고 있다. 제품의 제조 유통 판매시에는 이들 안전기준이나 법령을 만족하여야 하며, 일부 제품에 대해서는 品자, 電자등 해당 마크를 획득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안전기준이 국내 통용을 위한 것으로 국제적인 안전기준에는 미흡하다. 예를 들어 전기용품에 대한 안전기준으로서 電자가 미국의 UL마크와 같은 수준이 되도록 정비해야 할 것이다. OECD가입시 회원국에게 제조물책임제도를 권고하고 있기 때문에 적어도 OECD회원국에 제품을 수출하기 위해서는 OECD회원국의 안전기준에 도달해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제품의 안전도를 평가할 수 있는 전문기관이 필요하다.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 뿐만 아니라 제조물책임에 대한 대비를 하기위해서도 각 제품별로 안전도를 객관적으로 정확하게 평가할 수 있는 기관이 마련되어야 한다. 현재의 수준으로는 안전도를 평가할 수 있는 기관이 부족하기 때문에

정확하고 공정한 평가가 이루어 지기 어려운 실정이다. 그리고 각 기업이 제조물책임에 대해 적절히 대비할 수 있도록 제조물책임에 대한 전문가를 양성해야 할 것이다. 제조물책임이 도입되면, 기업에 상당한 부담이 되는 것이 사실이므로 제품의 설계에서 부터 제조, 판매에 이르기 까지 제조물 책임에 대한 대비를 할 수 있도록 전문가를 양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V. 결 론

제조물 사용으로 인한 피해발생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제조물 사용과 관련하여 피해를 구제하기 위한 제도가 강화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높아지는 가운데 제조물책임법의 도입이 논의되고 있다. 정부는 그동안 논의 되어온 제조물책임법을 97년에 입법할 예정으로 있다.

제조물에 대한 소비가 다양해지고, 개방화에 따라 수입상품 또한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제조물의 사용으로 인한 피해를 구제하기 위한 제도로써 제조물책임이 논의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그동안 제조물의 사용으로 인한 피해구제에 뿐만 아니라 제품의 안전에 대해 기업들이 등한시해 온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시장이 개방되고 경쟁이 치열해질 수록 안전도가 떨어지는 제품은 안전도가 높은 제품으로 대체되는 현상이 일어날 것이다. 소비자보호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그동안 소비자단체 등을 통해 이루어져왔던 소비자활동이 개별소비자에게로 확산되어 소비자 의식도 한층 향상되리라고 생각한다. 이러한 움직임은 기업에게 제조물 사용으로 인한 피해를 적극적으로 배상하도록 압력을 가할 것이고 우리나라에서도 어떤 형태로든 제조물책임법의 도입이 곧 시행되리라고 판단된다. 그러나 소비자보호원이 공청회를 통해 제시한 법안은 상당히 엄격한 책임원리인 무과실(결함)책임원리를 채택하고 있다.

그러나 앞서 이 제도를 실시하고 있는 선진국들도 이 제도를 실시하기에 앞서 오랜동안 논의를 거쳐 이루어 졌고 아직도 일부 국가에서는 많은 논란이 있는 점을 고려하면, 소비자를 보호해야한다는 명분하에 엄격한 형태의 무과실(결함)책임원리를 적용하는 것은 제조자에게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다. 따라서 소비자의 피해구제를 확대하면서, 기업의 경쟁력을 저하시키지 않도록 소비자와 제조자 모두에게 균형있는 제조물책임법을 모색해야 한다.

결론적으로 제조물책임의 도입과 시행에 따른 문제점과 대응방안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제조물책임의 기본 개념은 결함의 존재인데, 제조물책임의 도입시 결함유형에 따라 적절한 책임원리를 적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즉 제조물책임제도의 소비자보호 기능만을 강조하여 제조자에게 엄격한 책임원리가 적용되면, 소비자의 도덕적 위해가 발생하고 제조자는 과도한 부담을 지게될 것이다. 따라서 피해의 과실이 제조자에게 일방적인 경우에만 무과실책임을 적용하고 피해에 대한 사고를 억제하는데 소비자가 비교우위가 있는 경우에는 과실책임을 적용하도록 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결함은 그 유형에 따라 제조결함, 경고결함, 디자인·설계결함으로 구분하고, 소비자의 제조물 사용에 대한 주의수준을 결함의 존재를 파악하기 쉬운 제조상의 결함에는 무과실 책임원리를 적용하되 법원이 결함을 판정하기 어려운 경고상의 결함이나 설계상의 결함에는 과실책임원리를 적용하여 기업에게만 과도한 부담이 가지않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결함의 존재와 결함의 인과관계에 대한 추정을 법률적으로 규정하는 법률상의 추정은 소비자의 입증부담을 경감시키는 대신 제조자가 입증부담을 지는 것으로 제조자에게만 부담을 가중시키는 조항이다. 따라서 법률상의 추정보다는 사실상의 추정이나 민사소송상의 디스커버리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

또한 OECD가입으로 제조물책임의 도입은 피할 수 없는 상황이고 보면, 기업들 또한 적극적으로 안전도를 높여서 제조물책임에 대응해야 한다. 기업이 제조물책임에 대처할 수 있도록 정부는 안전기준이나 경고표시의 범주를 국제적인 수준으로 정하여 유도하는 것이 중요하다. 제조물책임으로 늘어날 소송비용에 대비하여 분쟁의 처리기관을 두어 운용하는 것도 제조물책임으로 인한 과급효과를 줄이는 방법이라고 생각된다.

부록 : 제조물책임법안 (소비자보호원 안)

제1조(목적) 이 법은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제조자의 재상책임을 정함으로써 소비자피해의 구제를 도모하고, 이로써 소비생활의 안정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제조물’이라 함은 제조 또는 가공된 동산 및 부동산중 분양공급주택을 말한다.

② 이 법에서 ‘제조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완성품의 제조자, 원재료·부품의 제조자
2. 제조물에 성명 상호 상표 및 기타 식별가능한 기호 등을 부착함으로써 자신을 제조자로 표시한 자 또는 제조자로 오인시킬 수 있는 표시를 한 자
3. 판매 또는 대여 등의 목적으로 제조물을 수입한 자
4. 제조물의 제조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만 당해 제조물의 공급자

③ 이 법에서 ‘결함’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한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당해 제조물에서 일반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안전성을 결여하고 있는 것을 말한다.

1. 당해 제조물의 성질, 사용방법 등에 대한 설명 지시경고 기타의 표시
2. 합리적으로 예상할 수 있는 당해 제조물의 사용
3. 당해 제조물이 유통된 기대

제3조(손해배상책임) 제조자는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하여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손해를 입은 사람에게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다만, 그 손해가 당해 제조물체 대해서만 발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조(면책사유) 제조자가 다음 각호의 1을 입증한 경우에는 제3조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면한다.

1. 제조자가 당해 제조물을 유통시키지 아니한 사실
2. 제조자다 제조물을 유통시킨 시점에는 결함이 없었다는 사실 또는 그 결함이 그후에 발생되었다는 사실
3. 당해 제조물의 결함이 법률이 정한 강제기준을 준수함으로써 발생하였다는 사실과 이 강제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하고 당해 제조물을 제조 또는 가공하는 것은 위법이 된다는 사실

4. 제조자가 당해 제조물을 유통시킨 시점의 과학 기술수준으로는 결함의 존재를 발견할 수 없었다는 사실
5. 부품제조자의 경우는 그부품을 조립한 완성품의 설계가 원인이 되어 결함이 발생하였다는 사실 또는 완성제조자의 지시에 따랐기 때문에 결함이 발생하였다는 사실

제5조(연대책임) 동일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는 자가 2인 이상 있을 때에는 각자가 그 손해의 전부에 대하여 연대책임을 진다.

제6조(결함의 존재 및 인과관계의 추정) ① 제조물을 일반적인 방법으로 사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용에 의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제조물에 결함이 존재하고 있었던 것으로 추정한다.

② 제조물에 결함이 있는 경우에 그 결함으로 인하여 생길 수 있는 손해와 동일한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그 손해는 그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추정한다.

제7조(면책특약의 금지) 이 법에 의한 제조자의 배상책임을 배제하거나 제한하는 특약은 무효로 한다.

제8조(소멸시효) ① 이 법에 의한 손해배상청구권은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손해 및 제조자를 안 때로부터 3년이 경과한 때에는 시효로 소멸한다.

② 이 법에 의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제조자가 손해를 발생시킨 제조물을 유통시킨 때로부터 10년이 경과한 때에는 소멸한다. 다만 이 기간은 신체에 축적된 경우에 사람의 건강을 해하는 물질에 의한 손해 또는 일정한 잠복기간이 경과한 후에 증상이 나타나는 손해에 대하여는 그 손해가 발생한 때로부터 기산한다.

제9조(과실상계) 피해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거나 피해자가 결함이 있음을 알고 제조물을 사용한 때에는 법원은 손해배상의 책임 및 그 금액을 정함에 이를 참작하여야 한다.

제10조(관할) 이 법에 의한 소는 원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이 경우 민사소송법 제31조 및 제 32조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원고의 의사에 반

하여 다른 법원으로 이송할 수 없다.

부 칙

제1조(시행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한 때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규정) 이 법은 이 법의 시행 후에 제조자가 유통시킨 제조물에 대하여 적용한다.

참 고 문 헌

- 강창경·최병록·박희주, 「제조물책임법의 제정에 관한 연구」, 연구보고서 94-03, 한국 소비자보호원, 1994.
- 곽윤직, 「채권각론」, 박영사, 1994.
- 김상용, “제조물책임의 법리구성”, 「인권과 정의」, 제217호, 1994.
- 김석철·노영화·박성용, 「소비자보호제도에 관한 연구」, 연구보고서 87-01, 한국소비자 보호원, 1987.
- 김성탁, “제조물책임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연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1.
- 김의진, 「미국의 제조물책임(PL)과 기업의 대응방안」, 연구보고서 12, 기아경제연구소, 1992.
- 김일중, 「규제와 재산권」, 한국경제연구원, 1995.
- 박기동, “미국의 제조물책임소송”, 「인권과 정의」, 제217호, 1994.
- 박세일, 「법경제학」, 박영사, 1994.
- 신광식·구본천, 「제조물책임법 도입의 경제적 효과분석」, 한국개발연구원, 1996.
- 신도철, “소비제품 안전성의 법경제학”, 「소비자연구」, 제3권 2호, 1992.
- 이경현·박인섭, 「소비자피해구제절차법의 개선방안」, 수시과제연구보고서 88, 한국 소비자보호원, 1988.
- 이상정·박인섭, 「제조물책임에 관한 연구」, 연구보고서 89-03, 한국소비자 보호원, 1989.
- 이승철, “소비자보호”, 「정책적 규제 비판」, 규제연구시리즈 16, 한국경제연구원, 1994.
- 최병록, “제조물책임의 법리와 입법방향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1994.
- 최병록, 「제조물책임법 도입의 법적·사회적 파급효과 분석」, 연구보고서 96-05, 한국 소비자보호원, 1996.
- 최병선, 「정부규제론」, 법문사, 1992.
- 하중선, “제조물책임법상의 입증책임”, 「인권과 정의」, 제217호, 1994.
- 한국개발연구원·한국소비자보호원, “제조물책임법의 경제적 효과와 입법방향”, 1996.
- 한국소비자보호원, 「제조물책임의 입법방향」, 정책세미나자료 94-01, 1994.
- 한국소비자보호원, 「제조물책임법의 경제적 효과와 입법방향」, 공청회결과보고서 96-01, 1996.
- 한국표준협회, “제조물책임 입법방향과 우리 기업의 대응 방안”, 1995.

- 한국표준협회, “제조물책임대책 특별세미나”, 1996.
- 한국공업표준협회, 「각국의 판례를 중심으로 한 제조물책임」, 1991.
- 황유인, “제조물책임법제정의 방향과 문제점”, 「인권과 정의」, 제217호, 1994.
- 행정쇄신위원회, 「행정쇄신」, 제13집, 1995.1.
- 「대법전」, 법전출판사, 1993.
- 田原陸夫, “文書提出義務の範圍と不提出の効果”, 「ジュリスト」, 1996, 10.
- Landes, William M. and Posner, Richard A., *The Economic Structure of Tort Law*, Havard University Press, 1987.
- Robert, Cooter and Tomas, Ulen, *Law and Economics*, Haper Collins, 1988.
- Malott, Robert H., 양승규 역, “형평있는 제조물 책임법”, 「서강 Havard Business」, 1-3, 1986.